

2021  
신남방  
신북방  
비즈니스  
상담사례집



##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상담사례집 발간사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어온 세계 경제는 국가마다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노력을 한 가운데 점차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변화한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KOTRA는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 지역과 러시아·몽골 등 신북방 지역 진출 전문 상담 및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5월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설치하였으며, 데스크의 해외조직으로서 2020년 2월부터 베트남(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뉴델리)에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 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기업활동 지원 및 상대국과의 상생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상담사례집은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에서 접수한 상담 중 문의 빈도가 높았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35건의 신남방 지역 무역·투자 상담 사례와 10건의 신북방 지역 무역·투자 상담 사례, 해외 진출 시 활용 가능한 국내외 유용한 홈페이지 정보 등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신남방·신북방 지역 진출에 본 상담사례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KOTRA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신남방·신북방 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김태호

# CONTENTS

## I. 신남방 지역 비즈니스 주요 상담 사례

### 베트남

01. 외국인계약자세(FCT) 부과 .....	08
02. EU-베트남 FTA 관세혜택 .....	10
03. HS 품목분류 변동이 없는 경우의 원산지 인증 및 FTA 활용 방안 .....	12
04. 합작 투자 유의 사항 .....	16
05. 상표등록 및 출원 절차 .....	19
06. 법인 취업규칙 등록 절차 .....	21
07. LED 조명제품 인증 .....	25
08. 백색가전 인허가 절차 .....	29
09. 핫도그 등 육가공품 수출 .....	32

### 인도네시아

10. 코로나19 긴급대응물품 의료기기 인증 .....	35
11. SNI 강제인증 .....	37
12. 코로나 의료용품 특별 통관절차 .....	39
13. TKDN(국산부품 사용요건)의 내용과 대응방안 .....	40
14. 현물투자 절차 .....	42
15. 현지 인력 채용 지원 .....	43

### 인도

16.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및 공제허용/불가 항목 .....	44
17. 차량용 블랙박스 수출 인증 .....	48
18. 의료기기 수출 절차 .....	50
19.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 시 유의사항 .....	53
20. 현지법인 폐업 절차 .....	55
21. 김 수출 시 유의사항 .....	59

### 태국

22. 김 제품 수출 시 HS 코드 분류 .....	60
23. 수산가공품 수출 요건 .....	61
24. LED 조명제품 인증 .....	64
25. 현지법인 법인장 변경 절차 .....	68

### 필리핀

26. 단감 수출 절차 및 수출대금 회수 방안 .....	70
27. 가공식품 인증 절차 .....	72
28. 의료기기(체외진단기) 수출 절차 및 규정 .....	75
29. 도급형태 철도 프로젝트 .....	77

### 말레이시아

30. 화장품 중복 등록 .....	80
31. 소프트웨어 수출 세관 신고 절차 및 실적 인정 방법 .....	82

### 싱가포르

32. 수입 관세 및 통관제도 .....	84
33. 치과용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	87

### 라오스

34. 한국산 중고버스 수출 .....	89
-----------------------	----

### 캄보디아

35. EU 무관세 혜택(EBA) 철회 .....	90
-----------------------------	----

## II. 신북방 지역 비즈니스 주요 상담 사례

### 러시아

36. 화장품 인증 및 인허가 절차 .....	94
37. 떡볶이 등 식품 인증 절차 .....	97
38. 의료기기 인증 및 등록 절차 .....	98
39. EAC 인증 취득 후 복수 바이어 거래 .....	101
40. 통관서류 및 인허가 절차 .....	102
41. 미국의 對 러시아 경제제재 .....	103

### 카자흐스탄

42. 법인 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 .....	104
---------------------------	-----

### 우크라이나

43.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	106
-----------------------	-----

### 우즈베키스탄

44. 의료기기 인증 .....	108
-------------------	-----

### 몽골

45. 식품 수입 시스템 .....	111
---------------------	-----

## III. 부록

1. 알아두면 유용한 무역투자 정보 .....	114
2.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소개 .....	121



|

# 신남방 지역 비즈니스 주요 상담 사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 01 외국인계약자세(FCT) 부과

**Q.** 베트남에 진출한 IT 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 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일부 금액이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용역 제공 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강진규 전문위원

베트남에서는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국 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유무와 관계없이 외국인계약자세(FCT, Foreign Contract Tax)가 부과됩니다.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베트남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 후 용역료를 지불합니다.

**베트남 외국인 계약자세란**

외국인계약자세는 베트남에 소재한 계약 주체(외국인 투자기업 포함)와의 계약, 하도급 계약, 합의, 협의 등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외국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베트남인과 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인코텀즈 D(DAT, DAP, DDP)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외국인계약자세는 CIT(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세) 및 VAT(부가가치세)로 구성되며 용역의 경우 소득세 5% 및 부가세 5%가 적용됩니다. 인코텀즈 D(ex. DDP) 조건으로 판매 시 부가세 1%, 법인세 1%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인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에 납세자 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 신고 후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차적인 FCT 원천징수 의무는 거주자 지불인인 베트남 업체(물품 혹은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에 있습니다.

**소득유형별 외국인계약자세 부과**

- **배당소득**  
외국 법인의 배당 결정액에 대한 해외송금 시 원천징수 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  
해외에 설립된 외국 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수입에 대하여는 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소득유형별

## 외국인 계약자세 부과

• **사용료 및 기술료 소득**

사사용권 혹은 지식재산권, 기술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이전에 대한 로열티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10%가 부과되고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 **외국인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FCT는 베트남과 해외로부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즉, 해외 법인이 베트남 내에서의 재화의 유통 및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의 경우 FCT 과세 대상입니다.

## 유의 사항

한국 수출업체는 계약 체결 전 원천징수 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해당 공제금액이 반영된 용역 대금을 베트남 바이어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 02 EU-베트남 FTA 관세혜택

**Q.**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해서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EV FTA 적용이 가능한지요?

**A.** 천정원 전문위원

이러한 경우 EU-베트남 FTA (이하 EV FTA) 적용은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했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세무관세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EV FTA의 한국산 원단 특혜 조항의 적용을 공지하며, EV 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 규정을 EU 수입통관 기준 2020년 12월 23일 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 EV FTA 활용

EV FTA는 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산 직물에 대해 원산지 누적 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또는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 원단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이므로, 국내 직물 수출기업들은 EV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국내 직물 수출 기업들은 한-EU-베트남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증명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직물의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직물 수출기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 관세청은 'EV FTA 한국산 직물 누적 규정 활용 길라잡이'를 배포하는 한편,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TIP** 원산지 누적 규정  
**원산지 누적 규정** 원산지 누적 규정이란 협정 당사국 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합니다.

---

**TIP**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인증수출자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베트남 | 관세·통관·세제

# 03 HS 품목분류 변동이 없는 경우의 원산지 인증 및 FTA 활용 방안

**Q.** 한국산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만든 물건을 한국으로 재수출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재수출되는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품목분류가 같을 경우에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2015년 원산지결정기준을 포함한 대대적 개정이 있었습니다. HS 협약이 약 5년 주기로 개정됨에 따라, 품목별 세율을 조정하고 상관행 및 교역환경에 상응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개별기업이 FTA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개정내용 중 가장 특이한 점은, 완제품과 원재료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입니다. 본래 '세번변경기준' 따라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코드가 달라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8517(통신기기), 8523(저장매체 등), 8529(디스플레이 부품), 8486(반도체 제조용 기기) 등 품목은 세번 변경이 없더라도 '같은 소호(6단위 HS코드) 내' 생산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해석을 둘러싸고 혼동이 존재해 왔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듈  
(8529.90)의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사례**

• HS 8529.90을 기준으로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HS 8529.9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인 것
- (2)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HS 8529.90, 2007년 초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디스플레이 모듈  
(8529.90)의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사례

(3)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HS 8529.90, 2015년 개정안)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 연결 공정의 특성상 고객사는 부가가치 기준 40%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기 3개의 규정을 보면 (1)번보다 (2)번이, (2)번보다 (3)번이 충족하기 쉬운 세번변경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의를 해온 기업의 경우,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지 않고 한-아세안 FTA의 적용을 선택하였으며, 2015년 개정안에서 '같은 소호 내'라는 용어의 의미가 FTA 적용 가능 여부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본래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와 완제품이 일정 수준 이상 HS코드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재료와 완제품이 '같은 소호(6단위 HS 코드) 내'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해당 규정의  
관세행정 관행상 해석

- 세번변경이 없는 물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본 쟁점 사항 해결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관세청 민원 답변에 따르면, 본 규정은 '세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불인정공정 이상의 최소공정만 거친 것이 입증되면 원산지로 인정한다.'로서 이는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기준'인 불인정공정, 당사자 요건, 직접운송원칙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비록 완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 6단위가 동일하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 동일 내용에 대하여 문의 기업 측이 베트남 관세 당국으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은 완제품과 원재료의 HS코드 6단위가 동일하더라도 베트남 기준 세부호인 8단위 HS코드는 달라져야만 원산지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1) HS 협약이 HS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제정되었고 6단위 이하의 세부호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점, 2) FTA 협정이 세계 공통 6단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통일화된 기준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노이 무역관과 문의 기업은 아래와 같은 방향을 논점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의  
관세행정 관행상 해석

〈민원 내용〉

2015년 개정 한-아세안 FTA의 HS 8529.90에 대한 원산지결정 기준 개정안은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비록 규정의 문구가 세번변경기준과 유사하지만, 사실상 품목 별 원산지결정기준과 무관하게 협정의 공통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세관에서 주장한 8단위 세부호가 변경되어야만 원산지가 인정된다는 답변은 다음의 사유로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FTA 협정이 세계 공통 6단위 HS코드를 기반으로 체결되며, 이하의 세부 분류는 각국의 자율적 분류에 따르기 때문에 베트남 세관의 답변은 논리적으로 부적합하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각국은 세분류의 자의적 변경을 통하여 상대국의 FTA 협정 혜택을 불가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베트남 관세율표에 따르면 특정 6단위 HS코드 하의 8단위 HS코드가 1개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HS 8523.52는 8단위 세부 분류가 HS 8523.52.00 하나만이 존재한다. 이 경우, 6단위 내의 8단위 세번변경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베트남 세관의 답변은 모순이 있다.

- 상기 주장에 대하여 2020년 11월 20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최종 답변을 받았으며, 한국 및 베트남 관세 당국 모두에서 세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FTA 공통요건만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완료

2021년 1월 7일 베트남 하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AKFTA 원산지증명서 최종 발급으로 장기간에 걸친 해당 개정조항 논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문의 기업은 후속적인 법률해석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상담 내방하고 있으며, 최근 상담을 통하여 AK Form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방식 변경(CTH→CTC)을 내부 논의 중입니다.

## 시사점

- FTA 협정은 협정 당사국의 HS코드를 기준으로 세율 양허를 규정 하기에, 국제 공통 HS코드 6자리 수를 기준으로 체결됩니다. 또한 HS코드 변경(실질적 변형)이 있어야 해당 국가 원산지로 간주하는 '세번변경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의 2015년 개정안에는 세번변경기준의 틀을 가지는 원산지결정기준이지만 '같은 소호(6단위 HS코드) 내' 생산도 원산지로 인정하도록 규정된 품목이 존재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공정만 거치면 HS코드 변경 없이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베트남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이 사실상 없었습니다만 사례를 통하여 한-아세안 FTA 개정안에서 보다 원활한 FTA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HS 8486, 8517, 8523, 8529의 일부 품목의 향후 협정관세 적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조약 제1852호, 2007. 6. 1.]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70호, 2015. 12. 23.]

# 04

## 합작 투자 유의 사항

**Q.** 베트남에서 합작투자를 고려 중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A.** 천정원 전문위원

### 합작투자의 장단점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의 투자 진출의 경우, 대부분 업종은 외국인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합작을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비용과 위험의 분산
- 합작 파트너사의 베트남 내 기반 활용
- 합작에 따른 현지 브랜드 인지도의 공동 활용 등

이처럼 합작을 통해 쌍방 간의 시너지 상승효과 등 합작투자의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작투자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국의 법제도 하에서 회사를 경영함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언어, 문화가 다른 외국 파트너사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입장으로 보아 비합리적인 사안이나 베트남의 상관습상으로는 통용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투자자 간 상호 신뢰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상관습상의 차이로 사소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케 해서 내부 갈등 요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이나 상관습적 차이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회사 운영상의 갈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 의사결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 및 투자법의 특성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 합작투자계약서 (Joint Venture Contract)

합작법인의 설립 시 필요한 것은 합작투자계약서(Joint Venture Contract)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한 계약서입니다. 합작투자계약이 작성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파트너사 간 상호 이익입니다.



### 합작투자계약서 (Joint Venture Contract)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상호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합리적인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지분 정리 방법, 상호 간의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 조항 등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투자자 간의 문제는 법인이 원만하게 잘 운영될 때보다는 무언가 원활하지 않게 운영될 때 나오기 마련입니다. 문제 발생 및 해결에 대하여 귀책사유 여부 등 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이 빈번하게 나오게 되므로 법인 설립 초기에 다소 어색하더라도 합작계약서의 작성은 매우 신중하고 자세하게 사안 및 그 해결에 대하여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합작계약서는 상호 간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그 내용은 각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재무적 의무, 지분 양도 금지 제한, 각 회사 내 주요직에 관한 임명 권한, 지분 지분 양수도 시 우선매수 청구권, 교착 상태 발생 시 지분 청산 또는 회사 청산 등의 제반 절차 및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통한 합작투자

베트남 기업법상 외국인이 주로 진출하는 형태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 회사이며, 한국기업의 경우 대부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통한 합작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는

- (1) 투자자는 2인에서 50인 이내로 설립 가능하고,
- (2) 최고 의결 기관은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이며,
- (3)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고 사원이 법인인 경우는 수임 대표자를 지명하여 사원총회에 참가토록 하며,
- (4) 사원총회에서는 정관 자본의 65% 이상 출석 및 출석정관 자본의 65% 또는 75%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됩니다.

따라서 의결권 확보 한국 투자자에게 유리한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및 정관 작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합작투자 시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은 경영권 확보입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는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의미하며, 각 안건의 사원총회 의결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통한  
합작투자

**(1) 사원 지분 총액의 65% 이상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회사 발전 방향의 결정, 사원총회 의장의 선출·면직·해임, 사장 또는 회장의 임명·면직·파면, 연간 재무제표의 승인

**(2) 사원 지분 총액의 75% 이상이 의결이 필요한 경우**

회사정관의 변경이나 보완, 회사의 구조 개편 및 해산, 총 자산 가치의 50% 이상 가치 자산의 매각

이상과 같이 합작투자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타국에서 파트너사 쌍방 간 문화적, 상관습상 다른 독립체가 새롭게 만나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쌍방 간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에 대하여 정관 또는 합작계약서에 분명하고 명료하게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05 상표등록 및 출원 절차

**Q.** 지식재산권으로서 상표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피해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 상표등록출원 절차

상표등록·출원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 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사전 조사

사전 조사란 출원 상표의 부등록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는 것으로, 법정 출원 요건은 아니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 조사에서 부등록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이의신청 기간 또한 길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한 후 등록 거절 통보를 받을 수 있기에 사전 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큼니다.

사전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상표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입니다. 타인의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기 때문입니다.

선행 상표를 발견하고도 출원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선행 권리자와 협의하거나 불사용등록취소(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무효청구(도용상표일 경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2) 심사

법정 심사 기간은 약 1년 정도라 하겠으나 심사 적체로 인해 통상적으로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실질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이의 신청 기간 또한 연장되어 출원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 상표등록출원 절차

**형식심사:**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 형식심사 실시, 출원서류에는 상표 샘플도 포함. 베트남에서는 시각적 상표만 출원 등록되며 비시각적 상표(소리, 냄새 등)는 출원 등록 불가

**출원공고:** 형식심사 통과 시 2개월 안에 출원 공고. 이로부터 특허청의 출원 등록 심사 결정이 행해질 때까지 일반인의 출원 이의신청이 가능

**실질심사:** 출원서의 실질 부적격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 출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실시

**이의신청:** 출원공고 이후 실질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일반인에 의한 이의신청이 가능

#### (3) 등록

상표출원결정서를 받은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등록 공고가 행해집니다. 등록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상표권은 발생하고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입니다. 차후 기간 만료 시 10년 기간의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 아직 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시장에서 아직 거래되지 않는 제품의 상표등록출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상표권보호 현황에 비추어,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데 있어, 현지 회사설립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이 상표등록이라 생각합니다.

※ **참고** 베트남 지식재산권국 웹사이트 (<http://www.noip.gov.vn>)

# 06 법인 취업규칙 등록 절차

**Q.** 베트남에서는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보훈사회국(DOLISA)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취업규칙의 작성 방법이나 등록 절차를 잘 몰라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취업규칙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취업규칙과 등록 대상**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사용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취업규칙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베트남에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보훈사회국(DOLISA)에 등록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기업의 내부 규정으로, 베트남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징계 등에 대해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내부노동규정 또는 내부근로규정(ILR, Internal Labor Regul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주위를 보면 한국 본사의 취업규칙을 베트남어로 단순 번역하여 베트남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분야의 타 회사 취업규칙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징계와 해고 등의 처분 근거가 되고, 향후 관련 분쟁 발생 시에도 처분이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베트남법에 맞게 각 기업의 특성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노동법상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는 견책,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최대 6월 간 임금인상 동결, 강등, 해고만 가능한데, 취업규칙에서 노동규율의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징계 유형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적 의무는 없으나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가급적 취업규칙을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취업규칙 위반 시  
처벌 사항**

2021년 이전에 이미 취업규칙을 등록한 기업이라도 개정 노동법에 따른 수정 취업규칙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효력이 만료된 취업규칙을 사용하면 오백만~천만 동(한화 약 24~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례로 구 노동법(Law 10/2012/QH13)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여러 조항에 부분적으로 존재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노동법(Law 45/2019/QH14)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처리 과정과 절차를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취업규칙과 관련한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더 살펴보면,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문서로 된 취업규칙이 없거나, 문서로 된 취업규칙이 있어도 관할 노동보훈사회국(DOLISA)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각 사안에 대해 오백만~천만 동(약 24~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취업규칙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오십만~백만 동(약 2만4천~4만8천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구 노동법에는 불시 근로감독에 관한 내용이 없었지만, 개정 노동법에서는 사전 통보 없는 근로감독관의 근로감독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여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노동법 관련한 감독과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개정 노동법에 따른 취업규칙을 꼭 등록하기를 권합니다.

**취업규칙  
등록 절차**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하노이에서의 취업규칙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할 당국**  
 하노이 노동보훈사회국(DOLISA)  
**주소:** 75 Nguyen Chi Thanh, Dong Da District, Hanoi  
**서류 접수 시간:** 월요일~금요일(8:00~11:00, 13:30~16:30),  
 토요일(8:00~11:00)
- (2) 제출 서류**
  - 하노이 노동보훈사회국(DOLISA) 원스톱 창구에 서류 접수
  - 취업규칙 등록 신청서

취업규칙  
등록 절차

- 위임장
  - 취업규칙 2부
  - 단위 근로자 대표 단체의 의견서
  - 취업규칙 제정 결정문
- (3) 원스톱 창구에서 제출 서류 검토: 하기 ①~③ 중 하나로 진행
- ①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것이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 명시하고, 보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함
  - ② 서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거절 사유를 명시해 통보함
  - ③ 제출된 서류가 충분한 경우: 서류 접수증을 발급함
- (4) 노동보훈사회국 내부 업무
- 제출한 취업규칙 관련 서류는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에게 전달됨
  -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은 담당자를 지정함
- (5) 서류 검토 및 결과 송부
-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취업규칙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함
  - 취업규칙의 내용이 모두 적법한 경우는 하노이 노동보훈사회국장의 서명이 된 승인 결과를 송부함

취업규칙  
등록 실무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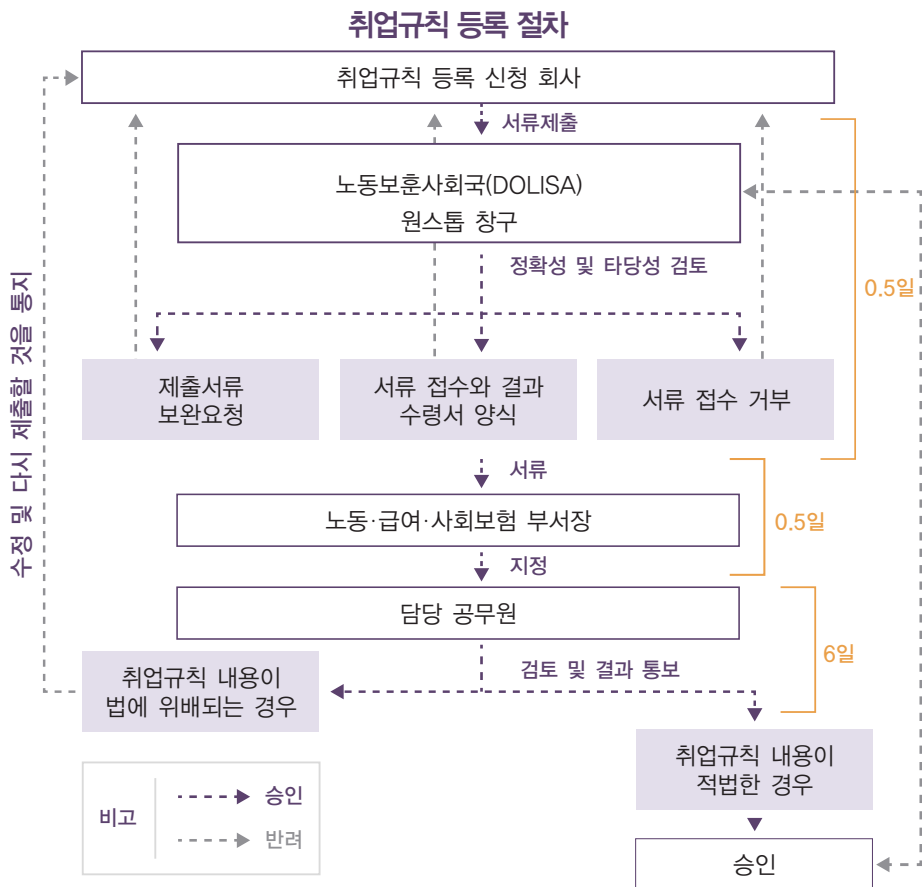
- (1) 오후 3시 이전에 접수한 서류는 당일, 오후 3시 이후 접수한 서류는 익일에 노동·급여·사회보험 부서장에게 전달되니, 가급적 3시 이전에 서류를 접수
- (2) 온라인(<http://dvc.vieclamvietnam.gov.vn>)으로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나 링크가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제출이 어려움
- (3)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서류 제출자의 위임장은 요구됨
- (4) 노동보훈사회국(DOLISA)에서 기업등록증(ERC)과 투자등록증(IRC)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 (5) 거의 모든 경우, DOLISA에서는 최소한 1회 이상 취업규칙 내용 수정을 요구함. 실무적으로는 DOLISA 담당자가 제출

취업규칙  
등록 실무 팁

서류의 보완을 위한 양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시간 절약을 위해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구두로 취업규칙 수정을 요청함

(6) 법상 유효한 취업규칙의 발효일은 DOLISA에서 취업규칙 보완 요청이 없다면 취업규칙 접수일로부터 15일 후부터임(노동법 제121조). 취업규칙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수정본 제출일 1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

취업규칙 등록 절차도



※ 참고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웹사이트 (<http://english.molisa.gov.vn>)



# 07 LED 조명제품 인증

**Q.** 베트남에 LED 등기구를 수출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KC와 같은 제품인증제도가 있는지 여부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베트남에 LED 조명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QCVN 19: 2019/BKHCN)에 따라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증명서를 발급받고 자기적합성 선언을 해야 하며 베트남 품질 마크인 CR mark를 부착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적용**

**LED 조명제품**

- 고정형 및 이동형 LED 등기구
-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50V)
-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더블캡)

**LED 조명제품에 대한 적용 표준 및 시행일**

(1) 전기안전

번호	대상 제품 / 안전 항목	적용 표준	시행일
1	고정형 및 이동형 LED 등기구	IEC 60598-1 :2014 / AMD1 :2017 IEC 60598-2-XX	2021.1.1
2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50V)	IEC 62560 :2011 + AMD1 : 2015 (TCVN 8782)	2021.1.1
3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더블캡)	IEC 62776 :2014 (TCVN 11846)	2021.1.1
4	광생물학적 안전성	IEC 62471 :2006	2022.1.1

(2) 전자파(EMC)

번호	대상 제품 / 안전 항목	적용 표준	시행일
1	전자파간섭 (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CISPR 15:2018	2021.1.1
2	전자감수성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IEC 61547 :2009 Ed 2.0	2021.1.1

베트남에 LED 조명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 현지 정부 지정 인증기관을 통해 시험/인증을 받아 자기적합성 선언을 하여야 하며 해당 주요 인증기관 연락처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주요 인증기관**

- (1) IEMM(Institute of Energy Mechanical and Energy-VINACOMIN / 하노이)  
전화: (+84) 243 854 5224 / 팩스 : (+84) 243 854 3154  
이메일: info@iemm.com.vn  
웹사이트: http://iemm.com.vn
- (2) QUACERT(Vietnam Certification Center / 하노이)  
주소: No. 8, Hoang Quoc Viet, Cau Giay District, Hanoi  
전화: (+84-4) 3756 1025  
Fax: (+84-4) 3756 3188  
이메일: quacert@quacert.gov.vn  
웹사이트: https://quacert.gov.vn
- (3) QUATEST 3(Quality Assurance and Testing Center 3 / 호치민)  
주소: 49 Pasteur Str.,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전화: (+84-8-3) 8294274(ext 312)  
팩스: (+84-8-3) 8293012  
이메일: dpn-hoa@quatest3.com.vn  
웹사이트: https://quatest3.com.vn

**인증기관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 (1) 인증기관의 신청서 양식(영어로 작성)
- (2) 기업정보 및 사업자등록증

인증기관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

(3) 시험 성적서: 인증기관의 시험소를 통해 제품 형식시험을 해야 하며, 제출 샘플 수량은 제품마다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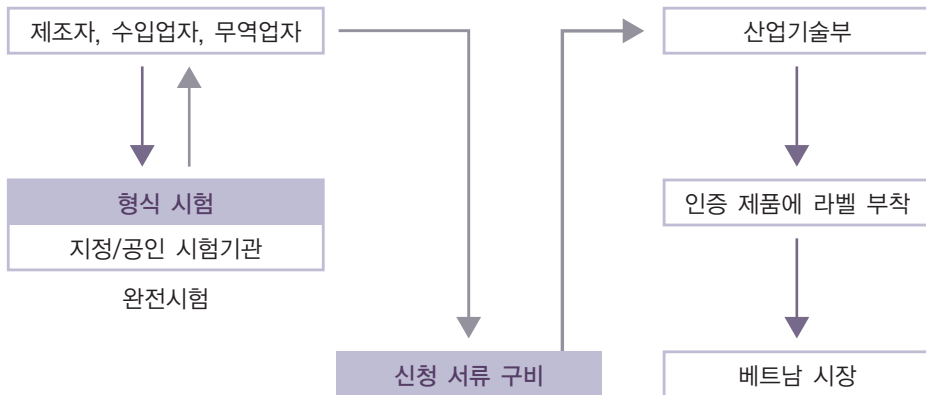
- ① 본 기술 기준의 규정에 따른 일반 테스트의 모든 수치
- ② 제품 라벨 촬영 컬러 사진들
- ③ 제품의 전체 구조 및 외부 모양을 보여주는 외관 촬영 컬러 사진들
- ④ 내부 구조 및 부품 배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내부 촬영 컬러 사진들
- ⑤ 부품명, 코드 기호, 기술 규격, 부품에 인쇄된 인증마크 및 해당 부품에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번호를 명확히 표시한 주요 부품 목록

(4) 신청제품에 대한 정보: 제품 모델명, 제품명, 제품사양 및 라벨

또한 LED 램프의 경우 베트남 산업기술부(MOIT) 규정(Decision 04/2017/QĐ-TTg)에 따라 베트남 내 지정된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 후, 베트남 산업부에 에너지효율 적합성 검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에너지효율  
평가 절차

산업무역부 관할 하에 있는 에너지 사용 기기 대상 에너지라벨 부착 규정 시행규칙



에너지 라벨



Comparative label  
에너지효율 등급라벨



Endorsement label  
에너지효율 인증라벨

# 08 백색가전 인허가 절차

**Q.** 베트남 CR mark 및 VNEEP 절차와 주의사항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전에 숙지하여 가정용 소형 전자 제품 수출 시 신속하게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

## A.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서 보통 안전(Safety), 전자파적합성(EMC), 무선(RF),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인증이 요구되며 수출하려는 국가에서 이 중 어떤 인증을 강제화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기술 규정 QCVN에 의거 안전 및 전자파에 대해 강제 인증인 CR mark를 요구하며 아직은 타 국가에 비해 규제하는 품목이 적은 편이나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은 STAMEQ(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표준계량품질총국) 또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인증기관 QUACERT, QUATEST 1, 2, 3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관용 베트남 HS코드를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CR mark 진행 시 반드시 베트남 현지 수입자가 있어야 하며 품목별로 정해진 TCVN(베트남표준 규격) 따라 제품을 시험합니다. 베트남 TCVN 규격의 내용은 IEC 국제규격과 부합되어 있습니다.



CR mark

## 인증 절차

수출 예정 제품의 인증 대상 여부 확인 → 현지 인증기관에 신청 → 신청서 검토 → 인증기관 심사원 공장 방문 심사 및 시료 샘플링 → 현지 지정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 → 인증기관에서 최종 문서 평가 → CR 인증서 발급

- ▶ 공장심사 및 제품 시험은 현지 인증기관과 협업하는 국내 기관에서도 진행 가능

**필요 서류**

- 신청서(영문)
- 제조자 및 현지 수입자의 사업자등록증
- 제품사양서 및 매뉴얼(베트남어)
- 회로도 및 부품 리스트
- 라벨 도안(베트남어)
- 업체 CI 로고(현지 상표 등록증 있는 경우에 한함)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방법	대상 품목
[Safety] QCVN 4 : 2009/BKHHCN AND REV. 1 : 2016	Type 5: 공장심사 및 제품 시험 Type 7: 선적 물량에 대한 제품 시험 (일회성 인증)	순간온수기, 온수 저장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주전자, 전기밥솥, 선풍기, 전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오븐, 휴대용 그릴, 케이블, 커피 포트, 손 건조기, 침수 히터 등
[EMC (EMI)] QCVN 9 : 2012/BKHHCN AND REV. 1 : 2018	Type 1: 제품 시험 및 시료 현물 검사 (Physical checking)	순간온수기, 휴대용 전기 드릴, 진공청소기, 냉장· 냉동고, 세탁기, 에어컨, 안정기 내장형 램프, 헤어 드라이어, 주방용 그라인더 및 믹서기, 전자레인지, 전기스토브(인덕션 포함) 등
[LED 제품 Safety + EMC] QCVN 19 : 2019/BKHHCN	Type 1: 제품 시험 및 시료 현물 검사 (Physical checking)	LED 등기구,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등

필요 서류

베트남은 기술 규정별로 CR 인증서가 발행되며, 적합성 평가 방법 및 대상 품목이 상이합니다. 모든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Type 5의 경우에만 매 12개월 이내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국내에는 대부분의 경우 안전 인증과 전자파 인증 모두 필수지만, 베트남에서는 품목에 따라 둘 중 한 가지만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서 안전과 전자파를 모두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예정이니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인증 대상으로 추가된 LED 제품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전자파적 합성에 대해서 EMI와 EMS를 모두 확인하는 품목입니다. 현재는 안전과 EMI만 규제하며, 광생물학적 안전성 및 EMS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규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에너지효율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VNEEP(Vietnam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에 따라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에너지라벨은 에너지효율 인증라벨(Endorsement label)과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Comparative label) 두 종류입니다.

- (1) 에너지효율 인증라벨(Endorsement label)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기 중 일정 기간마다 산업 무역부가 결정·고시하는 고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부착
- (2) 에너지효율 등급라벨(Comparative label)  
베트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로 제품의 상대적인 에너지 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제품 비교와 선택이 쉽도록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5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절약 제품임



에너지효율 인증라벨



에너지효율 등급라벨

베트남 | 무역 실무

# 09 핫도그 등 육가공품 수출

**Q.** 베트남으로 햄, 소시지, 핫도그 등 육가공품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류는 수출제약 요인이 많다고 하는데 수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이성진 전문위원

육류는 통상적으로 수출입 당사국 간 검역 협정 체결을 통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품목별로 별도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베트남과는 신선 닭고기만 검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닭고기 생산 공장이 등록된 업체는 수출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역 협정이 되지 않은 소고기, 돼지고기 및 가열제품(햄, 소시지, 돈가스 등)은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품목이라도 가열제품은 별도로 검역 협정이 체결되는데, 예를 들어 신선 닭고기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검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튀김 닭 등 닭고기 가열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육류 함량이 20% 이하인 육가공품의 경우 수출이 가능하여 고기만두 등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별로 검역 협정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실제 제품을 수출할 때 바이어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보건부  
수입식품 등록 제도**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안전성 공표 또는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식품은 2018년 2월 2일부터 베트남 정부 시행령에 따라 보건부의 식품등록증 없이도 수입업체가 자체 발급하여 시장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자체 발급 제외 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베트남 보건부의 별도 검사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 일반식품 등록절차**

2018년 2월 2일부터 베트남 정부 시행령에 따라 보건부의 식품등록증 발급 없이 수입업체가 자체 발급하여 시장에 상품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1) 자체발급 절차**

- ① 기업 자체적 식품 안전성 공표 : 대중매체 또는 자사 웹사이트
- ②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송부  
중앙 직할시, 성단위 인민위원회 지정 관할 기관
- ③ 서류 접수 및 상품 공표정보 공시



베트남 보건부  
수입식품 등록 제도

2) 소요시간: 7~14영업일

각 제품 유형별 식품안전규정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식품안전  
검사는 7~14일 정도 소요됩니다.

적합성 평가가 완료되면 적합성 선언을 하며, 선언문은 제품  
정보 서류와 적합성 증명서로 구성됩니다.

3) 기타 인증사항

HACCP, ISO22000, GMP 등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일부  
인증서들이 베트남에서 인정됩니다.

4) 상품등록 위해 한국 수출업체가 준비해야 할 서류

- 전 품목 필수 서류: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영문발급)
- 품목별 필요 서류
  - \* 상품 공표서: 베트남 보건부 양식
  - \* 지정검사기관의 식품안전검사 결과표
  - \* 상품 or 상품 성분의 효능 인증서
- 권장서류(인증관련): GMP, HACCP, ISO22000 등

\* 건강보조식품 등록절차

1) 보건부 등록절차

- ① 수출업체 준비서류(자유판매증명서, 위생증명서, GMP증명서,  
효능입증 서류) 제출
- ② 접수증 발급
- ③ 보완서류 제출
- ④ 심의결과 발표 & 승인

2) 소요시간

- 필수서류 미비 시 접수날 기준으로 근무일 7일 이내에 보완  
서류 요청
- 필수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는 날로부터 근무일 10일간 심사를  
진행, 10일 후 심사신청서를 권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인증 사항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GMP  
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통관절차

베트남의 수입식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검역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출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통관절차

### 절차

- 전자신고(E-customs)를 통한 신고 수리의 경우 일련번호 부여하고 세 가지 단위로 분류하여 전자서류 심사 또는 물품 검사를 진행. 서면 신고의 경우 NACCS 혹은 관할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Yellow, Red Channel로 나뉘어지며, Green Channel은 모든 검사 면제, Yellow Channel은 서류 재심사, Red Channel의 경우는 서류 재심사 및 물품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서류:** 검역검사등록서, 검사제품에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통관 서류\*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 보고서

\* 통관서류: 세관수입신고서, 수출계약서(혹은 신용장),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 10 코로나19 긴급대응물품 의료기기 인증

**Q.**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 식약처와 같은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 A. 김동준 전문위원

KF94 등급 마스크와 같은 생활용 필터링 마스크에 대한 인허가 제도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N95), 유럽(FFP2), 중국(KN95)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필터 성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지만 특정 성능 이상의 마스크를 의료용도의 호흡용 보호구로서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KF94 등급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인허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N95, 중국에서는 KN95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로 구분해 의료기기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도 의료용 마스크(호흡기용 마스크)로 분류되어 의료기기 인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현지업체가 있어야 하며 해당 업체는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의료기기 유통업허가증 IPAK(Izin Penyalur Alat Kesehatan)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유통업허가증을 보유한 업체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증을 받는데 이를 제품허가증(Izin Edar)이라고 합니다.

의료용 마스크로 분류된다면, 위험도가 낮은 CLASS I으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 정리된 의료기기 등록 절차와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등록 절차

- ① **신청:** 인도네시아 보건부 사이트(<http://regalkes.depkes.go.id>)를 통해 회사 등록 후 첨부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 ② **사전등록:** 접수 확인 통보 후 7일 안에 등급 구분 심사를 진행하고, 14일 안에 등록비를 납부합니다.
- ③ **심사:** 제품의 안전성, 품질과 유효성을 평가, 검증 및 심사, 심사 후 승인/거절/추가서류 제출(보완) 중 하나로 진행합니다. 보완은 2번의 기회가 주어져며 보완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

### 등록 시 작성 서류

- Application Form(신청서)
- Form A, Administration Data Requirement(행정 서류)
- Form B, Product Information Requirement(제품정보)
- Form C, Specification and Quality Information(사양 및 품질보증)
- Form D, Operational Manual(사용 안내)
- Form E, Post Market Surveillance(시판 후 평가서)

---

### 등록 시 준비 서류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료기기지침(AMDD,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을 적용하므로 기술문서를 공통양식(CSDT, 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으로 제출합니다.

- 품질시스템 인증서(SO 13485 에 따른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또는 의료기기 등급에 따른 품질시스템 인증서)
- 유통업허가증
- 시판 후 감사시스템(AMDD를 따름)
- 적용 규격(안전, 품질, 유효성 보증을 위한 국제규격 및 인도네시아 규격)
- 기술문서(CSDT)

---

### TIP

- ▶ 인도네시아의 경우, 동일 제품의 복수 등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수입업자 (또는 바이어)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해외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 인도네시아센터

- ▶ 소개: 인도네시아 신남방 국가로의 국산 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 ▶ 업무: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 지원(전시회, 학회 등), 수입 지원, 현지화 진출, 법인설립 대행(교육, 홍보마케팅) 외 제반 업무
- ▶ 연락처: shinsongo@medinet.or.kr

# 11 SNI 강제인증

**Q.** 코로나19 중에 인도네시아 SNI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 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

### SNI 강제 인증 제도 내용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인증의 줄임말입니다. 그중에서 'SNI 강제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SNI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일정 제품을 지정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SNI 제도가 ISO 인증(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되었지만,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SNI 인증을 신규로 따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SNI 강제인증 신청 자격 및 발급 절차

- SNI 강제인증의 신청은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할 수 있으며, 해외업체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자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SNI 강제인증의 발급 절차

(1)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관(BSN) 웹사이트에 등록된 SNI 인증 표준목록에 SNI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해당 웹사이트: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2)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LSPro)을 발굴합니다.(인정기관(KAN)으로부터 인가받은 기관)

▶ KAN 인가받은 LSPro의 '종류, 소재지, 인증 진행 가능 품목' 확인: <http://sispk.bsn.go.id/LPK/LembagaSertifikasi?jns=6>

(3) 수입업자 등 인증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증받은 기업 정관 사본, 영업허가(SIUP), 납세자고유번호(NPWP), 사업자고유번호(NIB),특허청으로부터의 브랜드 등록 증명서(상표출원서사용 가능) 등 요구서류를 LSPro에 제출합니다.

SNI 강제인증 신청  
자격 및 발급 절차

- (4) LSPro는 신청서류의 적합성, 완성도 및 기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제조공정 평가 및 제품 표본을 시험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한 관련 운영시스템까지 평가하게 됩니다.(이를 위해 제조업체의 초청을 받아 제조국가에 심사 출장)
- (5) LSPro는 수집한 상기 서류들과 표본검사, 제조공정 평가 결과 등을 최종 검토합니다.
- (6) SNI 인증발급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발급 후에도 이뤄지는 별도 시험검사로 4개 제품 Type 별로 검사 주기가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SNI 강제 인증신청  
유의 사항**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 제한, 자가격리 등 SNI 심사관의 국외 출장에 대한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의 LSPro들이 해외 심사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의 LSPro 중에 '심사 출장'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 간 접촉을 통해 '한시적인 SNI 화상 심사' 등 다른 대안을 모색 중이나, 아직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12 코로나 의료용품 특별 통관절차

**Q.**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산소발생기 등 의료기기를 긴급 수출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통관절차가 있나요?

## 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 일반 의료기기 유통 허가 및 통관절차

의료기기도 현지 수입 유통을 위해서는 보건부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사전 시장통제 절차와 사후 시장통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전 시장통제 절차에는 제조허가, 유통허가, 등록면허가 포함되며, 특히 제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업체는 반드시 ISO 13485 또는 ISO 9001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GMP, CoA(분석증명서), 안전 검사, 기타 기술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사후관리 절차에서는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샘플링, 광고 등이 포함돼 있고, 고유번호(NIB), 특허청으로부터의 브랜드 등록 증명서를 먼저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통 허가를 받게 되면 일반적인 제품 수입절차를 준용해서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코로나19 관련 특별 통관절차 동향 및 유의 사항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인도네시아 재난방재청(BNPB)의 코로나19 응급 지원 대상 품목에 산소발생기가 지정이 되면서, 재난방재청의 추천서(Rekomendasi)만 받으면 사전에 보건부의 유통 허가 없이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갑자기 재난방재청 추천서 발급에 앞서 보건부 확인 절차(의견조회)가 도입되었고, 보건부가 유통허가를 거절할 시 재난방재청도 추천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 통관절차가 일반절차 수준으로 강화되는 상황이므로, 수출하려는 제품이 응급 지원 대상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보건부 유통 허가를 받는 수준까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 규격 · 인증

# 13 TKDN(국산부품 사용요건)의 내용과 대응방안

**Q.**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부품 수출시, TKDN(국산부품 사용요건)이 강화되면 수출보다는 현지 투자진출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TKDN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방안이 궁금합니다.

**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TKDN 개념**

인도네시아 '국산부품 사용요건(Tingkat Komponen Dalam Negeri)'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무역장벽 중 하나로, 200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에 정부 프로젝트 및 물품/서비스 조달 시 지정 품목에 한해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고, 2018년 7월 13일에는 자국산 콘텐츠 비중을 강화하는 대통령령(PP Nomor 29 Tahun 2018)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국내산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TKDN 주요 내용**

TKDN의 주요 내용은 '산업부장관령(No.16/M-IND/PER/2/2011)'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KDN의 주요 내용에는 재화 생산에 사용된 자국산 원료 또는 부품 비중, 서비스의 자국 내 서비스 비중, 사업장 내 인도네시아인 종업원 비중, 생산 기계의 국내산 비중, 국내기업의 투자자본 비율 등이 있습니다.

**TKDN 등록 프로세스 및 자문**

취급 품목에 대한 TKDN 산출 방법 및 등록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TKDN 담당 기관(PT, Surveyor Indonesia (Persero))을 통해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TKDN 문제점과 대응 방안 및 자문**

TKDN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TKDN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고,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프로젝트 추진에 애로가 커지고 있습니다.



**TKDN 문제점과  
대응 방안 및 자문**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TKDN 강화 의지는 확고한 상황이므로, 자문기관을 통해 조기에 TKDN을 충족시켜 진입장벽을 경쟁기업들보다 먼저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력인프라, 정보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TKDN 요건 충족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이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 14 현물투자 절차

**Q.** 현지 투자 진출 예정인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현물투자가 가능한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b>현물투자 허용 여부 및 절차</b>	인도네시아에서도 공식적으로 현물투자는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물투자 절차 역시 현금 투자와 거의 동일해서, 주거래은행에 현지 투자 신고(현물 명시)를 하고, 현지 투자청에 현물투자에 대한 추가 투자 승인을 취득해야 합니다.
----------------------------	--

<b>현물이 기계인 경우 유의 사항</b>	다만, 현물이 기계인 경우에는 설립정관을 작성하기 전에 아래 내용과 같이 현물투자에 대한 증빙(번역공증 필요)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1) Bukti Pembelian Barang (Invoice): 기계 구매 인보이스
- (2) Surat Keterangan Penilaian dari Ahli (Appraiser): 감정 평가사 평가 서류

<b>현물투자에 대한 수입 관세 면세 규정</b>	현물투자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추진하는 경우, 재무부 규제 제 176/PMK.011/2009호 및 제188/PMK.010/2015호를 참고해 면세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은 보통 외국인의 현물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현지 파트너가 국내 투자로 추진 시에는 허용이 되지만, 지역 일간지에 현물투자를 공지해야 합니다.
---------------------------------	---

# 15 현지 인력 채용 지원

**Q.** 현지 투자 진출 예정인 기업입니다. 현지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 일반적인

#### 현지 인력 채용 채널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현지 온라인 채용 사이트(<https://www.jobstreet.co.id>)에 구인 공고를 올려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구직자를 찾는 경우, 인도웹(<http://indoweb.org>)과 같은 인도네시아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나 인력주선 업체들을 활용하여 채용하기도 합니다.

### K-MOVE 센터 활용

현지 인력 채용은 KOTRA 자카르타무역관[K-MOVE 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현지 한국인 직원 채용 지원

한국인 현지 주재 인력 채용을 원하는 경우, K-MOVE 센터 담당자에게 인력 채용을 신청하고, 기업소개서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한국의 월드잡(<https://www.worldjob.or.kr>)과 인도네시아의 네이버 취업 카페에 공고를 통해 인력 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 현지인 직원 채용 지원

현지인 직원 채용 지원을 원하면, 먼저 컨택코리아 웹사이트(<https://contactkorea.go.kr>)에 가입해 구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당자 확인 후 현지 구인 웹사이트(<https://jobstreet.co.id>)에 공고를 해 신청자를 모아 인력 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한국에 본사가 있는 투자 진출기업만 지원 대상임)

\* K-MOVE 센터 담당자(이메일): Ms. Presila([presil@kotra.or.kr](mailto:presil@kotra.or.kr))

인도 | 관세·통관·세제

# 16 사업소득 금액 계산방법 및 공제 허용/불가 항목

**Q.** 인도에서 연말 사업소득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 사업소득 금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며, 공제 허용이 되는 것과 안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사업소득 금액 계산 구조**      인도에서는 제조, 판매 등의 사업 활동 및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통상 회계장부상 순이익에서 사업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을 빼고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인도 사업소득 금액 계산 구조**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XXX
+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수익	XXX
-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수익,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비용	(XXX)
= 사업소득 금액	XXX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자본적 지출,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외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천징수하지 않은 지출**  
 이자 비용, 로열티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원천 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관련 지출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은 상대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는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지출액 100%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가를 받은 상대방이 거주자인 경우 지출액의 30%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연도 경과 후 원천징수를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은 지출**

균등부과금(Equalisation Levy) 과징대상\*인 서비스의 대기임에도 균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 청구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가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후 연도에 균등 부과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비거주 사업자에게 부과

**(3) 종업원 소득세 대납**

종업원에게 비화폐성 급여(주택제공 등)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소득세 대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특수관계인에게 초과 지급한 대가**

친인척, 임원, 조합의 파트너 및 주요 이해관계자(출자지분 또는 이익의 20% 이상을 배분받을 권리를 보유한 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상 필요, 공정가치 또는 지출에 따른 효익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특정 지불수단에 의한 지급**

Account payee cheque/draft(계좌 수취인 수표) 또는 Rule 6ABBA\*에서 정한 전자결제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동일인에게 1일 1만 루피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전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과거 소득세 계산 시 아직 결제하지 않은 부채를 비용으로 공제받은 후, 차후 연도에 동 부채를 1만 루피를 초과하는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이를 수익으로 과세합니다.

\*인도 관세당국이 정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credit card), 직불카드(debit card), 온라인 बैंकिंग(Net Banking), 즉시결제수단(IMPS) 등을 포함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6) 법률이 정하지 않은 연금기여금 등**

법률이 정하지 않은 단체, 연금 등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업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총당금 설정액 승인받은 경우에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지출한 비용은 원칙상 공제를 허용합니다. 비용으로 공제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에 대한 임차료, 수선비 등**

건물에 대한 임차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지방세 및 보험료는 비용항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전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익연동 등 변동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임차료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공제 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 관련 수선비, 보험료**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에 대한 수익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와 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학연구 지출**

-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은 공제를 허용합니다. 사업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지출한 과학연구 지출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뿐 아니라 자본적 지출 성격의 과학연구 지출(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제외)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연구목적에 아직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한 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합니다(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과학연구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과학연구 목적으로 사용 전 자산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과 처분금액 중 낮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처분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정부승인 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연구 또는 연구비용을 기부하였을 때 사업 연관성과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100% 또는 150%를 공제합니다.

**(4) 창업비**

인도 내국법인 또는 인도 거주자가 사업 개시 및 확장을 위해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

지출한 비용은 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를 허용합니다. 공제 가능한 창업비는 사업 타당성,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시장조사 등 사업 개시를 위한 분석보고서 작성, 계약서 작성 지원 등 법률서비스, 기업법에 따른 등록비 및 자본발행과 차입 등 자금 조달 비용을 포함합니다.

창업비는 프로젝트 비용(고정자산 등의 투자금액)의 5%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된 자본(지분투자액과, 무담보 사채 및 장기차입금 포함)의 5%와 프로젝트 비용의 5%를 창업비 공제 한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업비는 발생한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정액 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5) 대손금

영업과 관련된 회수 불가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실제 장부에서 제거한 채권 금액의 공제만을 허용하므로, 회수 불가능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이미 과세한 일반적인 영업채권의 대손금이 공제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설비, 기계장치 등의 양도로 발행한 채권을 대손 처리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6) 대손충당금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비용공제를 허용합니다.

**대손충당금 비용공제 한도**

구분	비용공제 한도
해외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Non-banking finance companies)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 금액의 5%
공공금융기관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 금액의 5%
인도 은행 (Indian banks)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 금액의 5%와 도시 외 지역 지점의 단기대여금의 10% 합계

※ 참고 인도 국세청 사이트 (<https://www.incometax.gov.in>)

# 17 차량용 블랙박스 수출 인증

**Q.** 인도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인도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인도표준국(BIS) 인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BIS 인증이 무엇이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BIS 인증이란**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는 제품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BIS 인증제도는 인도 표준에 맞는 물품에 대하여 인도 내 판매 및 수입을 허가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인증 대상 여부**

- 차량용 블랙박스는 BIS 인증제도의 종류 중 하나인 자진 등록 인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의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 해당 제도는 전자제품군에 대하여 인도 표준(IS)에 부합하는 제품임을 신고하게 하여 제조사별 고유 등록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등록번호가 나타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부합하여야 하는 인도 표준은 IS 13252(Part1)입니다.

**인증 절차**

- (1) 인증신청자 온라인 포털 등록(<https://www.crsbis.in/BIS>)
- (2) 샘플 테스트 요청
- (3) 샘플 송부
- (4) 샘플 테스트 결과서 온라인 포털 등록
- (5) 신청 관련 서류 우편 제출

**소요 기간**

- (1) 샘플 테스트 시험 기간 : 약 4주
- (2) 검토 기간 : 약 4~8주



**유의 사항**

- (1) 해당 제품의 국내제조업체, 수입업체에 대하여 BIS 지정 시험소에서 진행한 샘플 테스트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 (2) 해당 인증 절차 진행 후, BIS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 라벨을 부착하여야 인도에 수출 가능합니다.
- (3) 서류 준비 및 샘플 테스트 등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참고** 인도 BIS 공식 웹사이트 (<https://www.bis.gov.in>)

인도 | 무역 실무

# 18 의료기기 수출 절차

**Q.** 인도에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수출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 있다면 취득 절차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A.**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CDSCO,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는 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입 및 생산 허가를 내리는 주요 규제 기관입니다. 따라서 외국 및 인도 국내 업체들은 인도 내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 허가를 받으려면 CDSCO에 제품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이 필요한  
의료기기**

• 2021년 4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이 필요한 구체적인 의료기기 목록은 일회용 바늘, 일회용 주사기, 카테터(catheter) 총 37개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sposable Hypodermic Syringes</li> <li>• Disposable Hypodermic Needles</li> <li>• Disposable Perfusion Sets</li> <li>• Substances used for in vitro diagnosis including Blood Grouping Sera</li> <li>• Cardiac Stents</li> <li>• Drug Eluting Stents</li> <li>• Catheters</li> <li>• Intra Ocular Lenses</li> <li>• I.V. Cannulae</li> <li>• Bone Cements</li> <li>• Heart Valves</li> <li>• Scalp Vein Set</li> <li>• Orthopedic Implants</li> <li>• Internal Prosthetic Replacements</li> <li>• Ablation Devices</li> <li>• Ligatures, Sutures and Staplers</li> <li>• Intra Uterine Devices(Cu-T)</li> <li>• Condoms</li> <li>• Tubal Rings</li> <li>• Surgical Dressings</li> <li>• Umbilical tap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ood/Blood Component Bags</li> <li>• Organ Preservative Solution</li> <li>• Nebulizer(effective from Jan. 1, 2021)</li> <li>•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effective from Jan. 1, 2021)</li> <li>• Glucometer(effective from Jan. 1, 2021)</li> <li>• Digital Thermometer(effective from Jan. 1, 2021)</li> <li>• All implantable medical devices Equipment (effective from April 1, 2021)</li> <li>• CT Scan Equipment(effective from April 1, 2021)</li> <li>• MRI Equipment(effective from April 1, 2021)</li> <li>• Defibrillators(effective from April 1, 2021)</li> <li>• PET Equipment(effective from April 1, 2021)</li> <li>• X-Ray Machine(effective from April 1, 2021)</li> <li>• Dialysis Machine(effective from April 1, 2021)</li> <li>• Bone marrow cell separator(effective from April 1, 2021)</li> <li>• Disinfectants and insecticide specified in Medical Devices Rules, 2017</li> <li>• Ultrasound equipment(effective from Nov. 1, 2020)</li> </ul>
--	--

**등록이 필요한  
의료기기**

구체적 목록은 위와 같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의 경우,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제조자는 CDSCO 산하 인도 의약품통제국(DCGI)로부터 '이의없음확인서(NOC, Non Objection Certificate)' 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 등록 절차**

- 등록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CDSCO의 웹사이트 SUGAM 포털 (<https://cdscoonline.gov.in>)에서 온라인을 통해 인허가 등록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필요 서류는 원본으로 CDSCO 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소명 요청 기타 통지는 이메일로 이루어집니다.
-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SUGAM 포털(<https://cdscoonline.gov.in>)에서 신청인 정보 제출
- (2) 인허가 대상(의약품 등) 정보 제출
- (3) 제조/사이트 정보 제출
- (4) 신청 양식 및 필수 서류 제출

**제출 서류**

- (1) 수입처 회사(기관)명
- (2) 사양 및 표준 규격
- (3) 세부 정보(모델명, 시리얼 번호, 용도, 위험등급, 기대수명, 멸균 상태, 브랜드명)
- (4) 국제인정기구포럼(IAF) 적합 증명서
- (5) 원산지 자유판매증명서
- (6) 신청자에 대한 수입업체 확인 성명서

**등록 유효기간**

등록 승인 후 중도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승인일로부터 5년마다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유지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 만료 시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신청해야 합니다.

---

**수수료**                    물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건당 약 3,000\$(USD)(추가로 의료기기의 경우, 종류별 1,500\$(USD) 발생)이며 제조 현장 검증 시 6,000\$(USD)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증서 발급**            물품에 따라 제조 현장에 대한 자체 심사 또는 지정기관 심사를 받게 되며, 검사 진행 후 Form MD 15라는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인도에서 수입통관 시 제출합니다.

※ **참고** CDSCO 웹사이트(<https://www.cdsoonline.gov.in>)

# 19 근로계약 체결 및 종료 시 유의사항

**Q.** 인도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과 근로계약 체결이나 해지할 때 어떤 유의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인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기업과 직원이 자유롭게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 정해진 법률 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인도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을 관리하는 일반 규정은 고용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근로 계약 체결 시,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실무상 고용 관계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작성을 추천합니다.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계약의 조건이 인도 근로법 조항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법률에 정의된 최소 작업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로 산업고용법(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과 같은 특정 법률은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해당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 기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단기간 또는 장기간일 수 있으며 업무 범위 및 근무 장소, 수습 기간, 확인 절차, 근무 시간, 휴직 자격, 급여 및 기타 법적 혜택 자격, 경쟁 방지 및 비밀보호 유지 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인사, 노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의 조건과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금융업, 의약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정형화된 근로계약서 형태로 대규모 고용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고용계약은 3개월에서 6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후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정직원 여부, 산업분쟁법 보호 대상 여부, 노동법 보호 대상 여부는 고용계약의 계약조건과 실제 업무 범위 및 직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 이러한 고용 관계의 실질을 특정하여 이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해지 시  
유의 사항**

고용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건의 발생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 (1) 합의된 계약기간이 완료된 경우
- (2)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 (3) 상호합의 하에 계약 종료한 경우
- (4) 계약서에 합의된 대로 일방 당사자가 해지하는 경우

인도 산업분쟁법은 근로자 해고 시 최소 1~3개월의 통지기간 또는 해고 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 시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고용 관계 해지에 대해서는 주법 규정과 고용 계약 조건이 적용되며 최소 1개월의 서면 통지 또는 1개월 치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예고 없이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범법 행위와 관련된 해고를 제외하고,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해고는 조사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해고 원인에 대한 통지, 직원의 항변 절차 기회 제공,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기록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해고는 불법 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각 근무 년도에 대한 15일 치의 급여인 해고보상금과 1~3개월의 통지(기업 직원 수에 따라 다름) 또는 그 대신 급여에 해당하는 법정 중복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주의 재산에 어떠한 손해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직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의 범위까지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고용이 심각한 위법행위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후 해고된 직원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기업은 해고된 직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송부하고, 기업과 직원 간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상호 정산하여 문서로서 합의하여 직원이 기업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남은 비용이 없으며 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 현지법인 폐업 절차

**Q.** 인도에서 운영 중인 현지법인을 폐업하고자 합니다. 현지법인 폐업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A.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인도에서 현지법인 폐업 방식은 크게 자발적 청산과 등록말소 방식이 있습니다.

### 자발적 청산

자발적 청산은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가 스스로 청산 개시를 원하는 경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 (1) 자발적 청산 충족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기업등록국(Registrar of Companies)에 자발적 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사회 결의

자발적 청산 개시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과반수의 이사가 서면동의(Declaration of Solvency)를 해야 합니다.

- 변제할 채무가 없거나 회사에 속한 재산의 처분을 통해 모든 채무의 변제가 가능함
- 청산은 다른 누군가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님

##### ② 감사보고서 등 구비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이사의 결의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직전 2개년 또는 회사의 존속 기간 중, 짧은 기간에 대한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평가보고서

##### ③ 주주총회 결의 및 채권자 승인

이사회 결의 후 4주 이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발적 청산 개시 및 청산인 선임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후 7일 이내에 그러한 결의에 대한 회사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자발적 청산

### (2) 자발적 청산 절차

복잡한 이해관계나 소송 등이 없는 경우, 자발적 청산의 완료에는 일반적으로 8~1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사회 소집 및 채무변제에 대한 과반수의 이사 확인



자발적 청산의 개시 및 청산인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후 4주 이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



기업등록국 및 인도 도산위원회(IBBI) 신고(주주총회 결의 후 7일)



청산 개시 및 이해관계자의 청산 절차 참여 안내에  
관한 신문 공고(청산인 선임 후 5일)



세무공무원에게 청산인 선임 통지(청산인 선임 후 30일)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 청구(청산 개시 후 30일)



청산인의 중간보고서 작성(청산인 선임 후 45일)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관한 확인 및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  
(마지막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세무공무원의 청산인에 대한  
납부세액 통지(청산인 선임 통지 후 3개월)



이해관계자 채권 변제(자산처분 후 6개월)



청산인의 연차 보고 및 청산 최종보고,  
기업재판소(NCLT)에 대한 청산 종료 신청



기업등록국에 기업재판소의 청산 승인 서류 제출(기업재판소의 승인 후 14일)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등록말소

인도 회사법은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있는 권한을 기업등록국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말소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는 자발적 청산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Fast Track Exit Mode'라고 합니다.

### (1)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직전 2개년도 동안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휴면회사 지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 등록말소 신청 제한

등록말소 신청 3개월 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① 상호 변경, 등록 주소 변경
- ② 자산 또는 권리의 처분
- ③ 등록말소 신청을 위한 활동 또는 법률상 의무사항 준수 이외 다른 사업 활동
- ④ 법원을 통한 조정,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⑤ 회사법 또는 도산법에 따른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3) 등록말소 신청서 제출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록신청을 담당할 이사를 지명해야 하며 이사회 개최 이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등록말소 신청은 E-Form STK-2 양식과 채무 완납 확인, 손해 배상책임 약약서 등 관련 서류와 CA, CS 또는 CMA의 인증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 (4) 회사에 의한 등록말소 절차

회사에 의한 등록말소는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등록말소에 관한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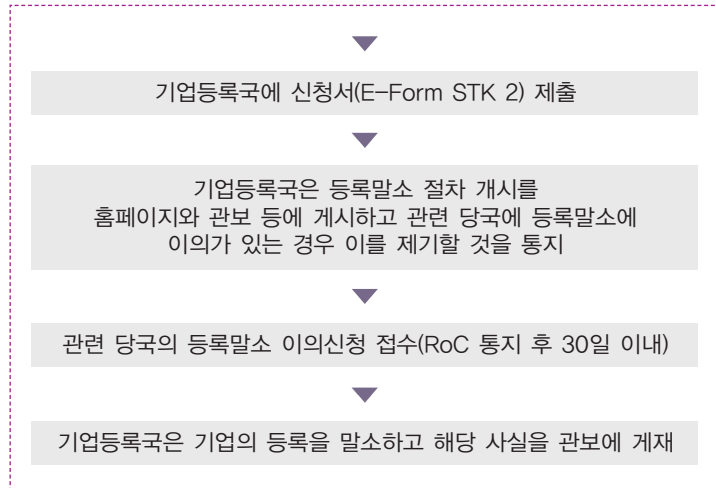


납입자본 75% 이상 주주의 특별결의



과세 관청 등 관련 당국의  
등록말소 신청 동의서(No objection certificate) 수령

## 등록말소



# 21 김 수출 시 유의사항

**Q.** 우리나라 김 수출이 6억 불을 초과하는 등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 인도로 김 수출을 계획 중입니다. 김 수출 전망에 대한 정보와 바이어 확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A. 이성진 전문위원

인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 4년간 수출이 2배로 늘 만큼 우리 농·식품 수출의 큰 시장으로서 성장을 기대하는 국가입니다. 다만 김은 아직 현지에서의 인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건조 김은 인도에서 굉장히 생소한 식재료이며, 인도 음식에도 쓰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도인들은 건조 김이 사용되는 아시아 음식도 즐겨 먹지 않아, 전반적으로 건조 김의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전체 김 수출은 6억 42만 1,000\$(USD) (2019년 5억 7,900만\$(USD)로 6억\$(USD)을 초과하였으나, 대(對) 인도 김 수출은 30만\$(USD) 수준(0.005%)에 머물러 극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건조 김은 주로 현지 한국인과 일식당 등에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사가 인도 시장을 목표로 수출을 추진 시 초기 시장개척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막 수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귀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건조 김에 대한 현지 소비가 활성화되고 김 수출이 활발한 국가로 먼저 수출을 착수하여 수출을 늘려나가면서 신시장 개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 22 김 제품 수출 시 HS 코드 분류

**Q.** 김밥용 김 또는 김자반의 태국 세관 HS 코드 분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강진규 전문위원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유일하게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김 제품은 상호대응세율 부과 대상이며, 태국으로 김 제품을 수출할 시 한-FTA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호대응세율**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2 제7항에 따라 각 체약국은 협정 부록으로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지정하고, 상대국은 상호대응세율을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은 태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 품목(Normal Track)으로 양허했다라도 일반품목의 양허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 부과가 가능합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 발효 초기에는 많은 한국 민감품목의 세율이 10%를 초과하여 태국에서 해당 품목 수입 시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MFN 세율, 기본세율)이 적용됐으나 매년 한국 민감품목의 세율도 낮아져서 현재는 대부분의 품목 세율이 10% 이하입니다.

**마른 김류의  
HS 코드**

김밥용 김은 마른 김류에 해당하며, HS 코드 1212.21로 분류되어 태국 내 수입 시 기준세율은 5%입니다. 한국에서는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국인 태국에서도 기준세율(MFN) 5%를 그대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한-아세안 FTA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세내용은 농식품 수출정보 포털 (<http://www.kati.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 수산가공품 수출 요건

**Q.** 태국으로 조미김 등 수산가공식품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산가공식품의 태국 수출 시 필요한 인증과 구비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 이성진 전문위원

### 태국 가공식품 수입 과정

수출입 업체 간의 계약 체결 → 태국 식품 수입 허가 취득(수입업자) → 수입 제품등록(태국식약청/수입업자) → 수출 물품 준비(라벨 부착 등) → 물품 선적(수출지) → 수출통관 → 물품 하역(도착지) → FDA LPI (태국 수입 신고제도; License Per Invoice) 신고 및 육안검사 → 수입통관 → 물품 출하 → 유통 → 태국 식약청의 사후 규제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식품 수입 라이선스(허가) 취득 및 제품등록

- 태국 내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태국 상무부 사업개발국 담당)과는 별도로 태국식약청(Thai FDA)에 식품 수입 라이선스(허가) 발급 및 수입 제품등록을 신청하여 식품 일련번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 태국 내 식품은 구체적 통제 식품, 표준식품, 라벨 부착 식품, 기타 일반식품의 4가지로 분류되며, 각 식품 분류에 따른 인증 및 등록 절차가 상이하므로, 정확한 식품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식품등록을 위해 제조업체에서 제공해야 할 서류로는 제품 품질 인증서류(원산지에서 발급된 GMP, HACCP, ISO 9001, ISO 9002 중 한 가지 이상), 제조업체 정보, 제품정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아세안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는 원산지 증명서(AK Form)를 구비해야 합니다.

### 태국의 식품 분류 및 구비서류

#### 구체적 통제 식품(Specific Controlled Food)

- 광범위한 소비에 따른 위험성이 수반되는 식품, 유아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소비자 계층이 존재하거나 제조공정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식품 등
- 라벨 부착 전 라벨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 해당 식품: 우유, 식품첨가제, 영유아 식품(분유 등), 시클람산나트륨 포함 식품, 유아용 및 어린이용 보충 식품, 다이어트 식품 등

태국의 식품 분류  
및 구비서류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

- 구체적 통제 식품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은 식품군으로 식품 정보 제공 (Food Declaration) 및 라벨 부착 필요
- 해당 식품: 커피, 차, 크림, 초콜릿, 식초, 식용유, 광천수, 젓갈 및 장류, 꿀, 잼, 두유, 아이스크림, 반가공 식품, 로열젤리, 조미김, 생선 액젓 등
- 태국 식약청의 라벨 부착승인 필요

**라벨 부착 식품(Label-Needed Food)**

- 구체적 통제 식품 및 표준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으로 식품 정보 제공 및 라벨 부착 필요
- 해당 식품: 빵, 사탕, 젤라틴 함유 식품 및 젤리류, 견, 사탕, 즉석조리 식품, 마늘 가공식품, 일부 고기제품, 특수목적 식품, 착향료 등
- 태국 식약청의 라벨 부착승인 필요

**기타 일반식품(Other General Food)**

- 위의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으로 신선식품 등이 포함되며 식품 등록 번호 불필요
- 주요품목: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식물성 제품, 원초 김 등

\* 식품 분류별 등록 시 구비서류

인증 절차 단계	필요 서류	예상 소요 기간
식품수입 라이선스 (공통)	신청서, 신분증 사본 및 거주 등록증, 상무부 사업자등록 증 사본, 주주명부 사본, 위임장, 사업장 및 물류창고 지도	7일 (근무일 기준)
식품등록 (구체적 통제 식품)	신청서, 식품 수입 허가서 사본, 태국어 및 외국어 표기 라벨 4부, 식품 포장 용기(도색된 식품에 한함), 제조업체 의 제조 공식 및 제조공정 서류, 자유판매증명서(맛에 대 한 상세 기술 불가 시), 제조시설 증명서(주1), 식품 샘플 1개	35일 (근무일 기준)
식품등록 (표준식품 및 라벨 부착 식품)	신청서 식품 수입 허가서 사본, 제조시설 증명서(주1)	2일 (근무일 기준)
라벨링 사전승인 (일부 표준식품 및 일부 라벨 부착 식 품-주2)	신청서, 그 밖의 서류는 구체적 통제 식품의 식품등록 서류와 동일	35일 (근무일 기준)

태국의 식품 분류  
및 구비서류

주1) 제조시설 증명서는 GMP, HACCP, ISO 9001, ISO 9002 등에 준하는 인증 중 1개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제조시설 증명서 상에 필수 포함 내역은 제조 업체명, 제조지, 제품 상세 내역(식품분석 보고서, 식품 성분 및 제조법, 라벨, 샘플), 제조증명서 발행일자 명시(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발행기관 기재 필해야 하며, 증명서 진위 증빙(영어가 아닌 경우 태국어 또는 영어 번역하여 공증받아 외교부 영사 확인 및 주한 태국 대사관 인증)이 필요함

주2) 표준식품 중 로열젤리 및 로열젤리 함유 식품, 식품 보충제와 라벨 부착 식품 중 특수목적 식품(임산부용, 노약자용, 질병 치료 기능 함유 식품 등)에 한함

태국 식품  
라벨링 제도

- 식품법(Food Act B.E. 2522(1979)) 및 하위법령인 공중보건부령 (Notifications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194(B.E.2544))에 의거, 공중보건부에서는 식품 제조·수입·판매 카테고리를 결정하고, 식품 라벨링이 부착이 요구되는 식품군 규정, 라벨 내용, 라벨 부착 기준 및 세부 조건, 라벨링 상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음
- 식품의 품질, 수량, 효능 또는 기타 특정 문구, 제조지 및 제조국 등에 관한 라벨 표기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할 목적으로 부착되었을 때 그에 대한 제재 규정이 존재함
- 라벨은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중보건부 장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 라벨링 필수 기재 사항

- 식품명
- 제품등록번호(FDA 등록 번호)
- 제조 업체명 및 주소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 업체명 및 주소
- 순 중량
- 필수성분(%로 표기)
- 알레르기 관련 사항
- 보존료 사용 시 명시, 천연 식품 색소 또는 인공 식품 색소 사용 명시(해당 시), 천연향 또는 인공 향 첨가 명시(해당 시), 인공당분 포함 명시(해당 시)
- 제조일/월/년
- 유효기간 표시(월/년 또는 일/월/년)
- 보관법(필요시)
- 조리 예시(필요시)
- 사전주의가 요구되는 식품의 경우 특정 문구 삽입(예: 신생아 섭취 불가, 영아 분유로 대체 불가 등)
- 특정 소비계층을 위한 식품의 경우 안내문(영아 월령에 따른 권장 섭취량 등)

- 로열젤리, 로열젤리 제품, 마늘 관련 제품 등 특정 식품의 경우 라벨링 부착 이전 태국 식약청(FDA)를 통한 사전승인 필요

태국 | 무역 실무

# 24 LED 조명제품 인증

**Q.** 태국에 LED 조명을 수출할 때 어떤 인증이 필요하나요?

**A.** 천정원 전문위원

태국으로 수출하는 LED 조명은 태국의 인증 담당 기관인 태국 산업표준연구원(TISI)으로부터 강제 인증 (Compulsory Standard)을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태국 안전규격 (TIS)**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의 강제 인증 (Compulsory Standard) 취득 품목인 경우, 인증 취득은 제품 통관 및 시장 유통에 필수사항이며, 미취득 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규격 신청 프로세스로 많은 기업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 이해와 규격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태국 안전규격(TIS, Thai Industrial Standards)을 이해하려면 먼저 태국 산업표준원(TISI)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태국산업표준원은 1969년 1월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기관으로 설립됐으며, 우리나라 한국기술표준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군 중 산업부에서 지정하는 안전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TISI승인이 있어야 통관 및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TISI 홈페이지([https://www.tisi.go.th/website/standardlist/comp\\_thai/en](https://www.tisi.go.th/website/standardlist/comp_thai/en))에서 강제 인증 리스트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SI 안전 인증 종류**

TISI 안전 인증은 크게 자율 인증과 강제 인증의 두 가지 라벨로 구분됩니다.



자율 인증마크  
(Voluntary certification mark)



강제 인증마크  
(Mandatory certification mark)



## TISI 안전 인증 종류

둘 중에 좌측의 마크는 자율 인증으로 태국 산업부에서 태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제조사에 마크 신청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국내 제조사만 신청이 가능한 마크로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많은 유통업체에서 제조사 측에 자율 인증마크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강제 인증마크는 TISI 강제 인증리스트에 속하는 제품의 국내 및 해외 제조사들이 반드시 신청하고 태국 TISI 승인을 받은 후 제품에 라벨 표기를 해서 통관 및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강제 인증 품목이지만 제품에 TISI 마크가 없는 경우에는 통관 및 유통이 불가하며, 유통 시 그에 해당하는 법률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TISI 강제 인증 프로세스

TISI 프로세스 중 가장 어려운 두 가지 프로세스는 공장심사(Factory Audit)와 샘플시험(Sampling test)입니다. 공장심사는 품질 관리(Quality Control)를 의미하며, 샘플시험은 제품 품질(Product Quality)을 의미합니다.

### (1)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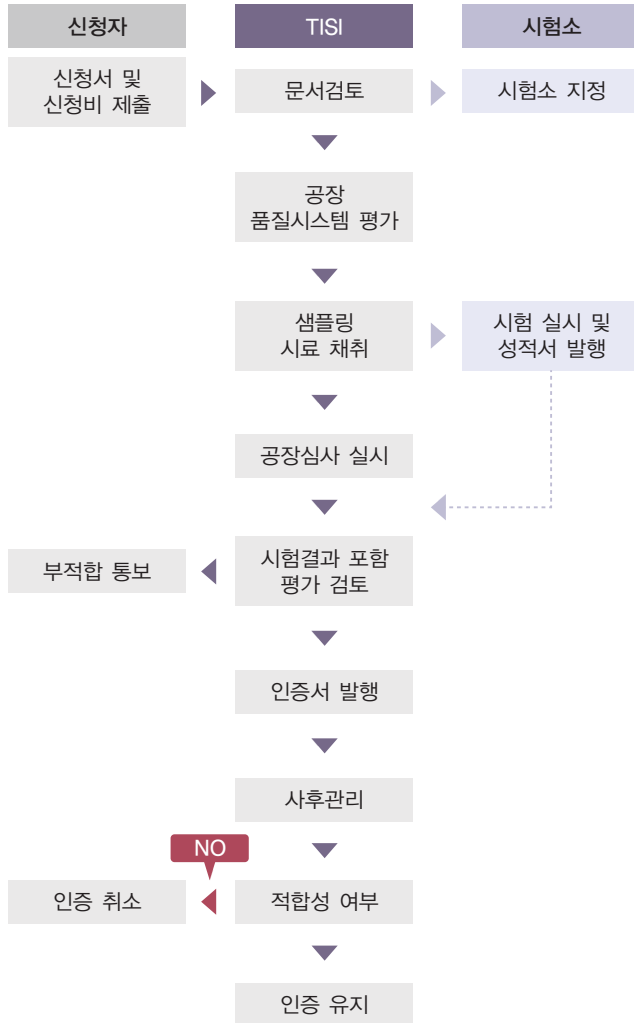
신청하는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해서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TISI에서 요구하는 규격 항목에 준해 공장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장심사는 태국 TISI에서 지정한 심사 기관(Inspection Body)에서 심사원을 공장으로 배정해서 진행됩니다.

현재 TISI가 지정한 공장심사기관은 19곳이 있습니다. 공장 심사는 ISO 9001 규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공장 심사에는 1박 2일이 소요되나,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총 한국 공장 기준 3박 4일, 중국 공장 기준 2박 3일 또는 3박 4일로 진행됩니다.

이는 공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장심사 비용은 심사료뿐만 아니라 심사원의 항공료, 숙박비 등 심사를 진행하기

TISI 강제 인증  
프로세스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조사 또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샘플시험(제품안정성 시험)

공장심사와 함께 제품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태국 현지 시험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샘플시험 절차는 업체들이 TISI 인증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샘플 시료는 임시 통관 절차(NSW 시스템)를 거쳐서 태국으로 반입되어야 합니다. 인보이스상에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제품을 실제 생산하는 공장 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받는

## TISI 강제 인증 프로세스

사람(Consignee)의 경우 실제 수입자 또는 신청자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이 이미 TISI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입자 또는 신청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료가 도착해 실제로 태국 세관에서 통관됐다는 서류를 받드시 TISI에 제출해야 시험 시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샘플 시료가 도착하면 시료를 가지고 TISI 3층의 인증국(Certification Division)에 방문해 TISI 담당자를 배정받은 후 시료 검수와 함께 도장(Sealing) 및 샘플테스트확인(Sample Testing letter)을 수령합니다. 그 후 TISI에서 지정한 시험소로 시료를 전달하고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샘플테스트확인서(Sample Testing letter)가 없는 보고서는 TISI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장심사와 시험 보고서가 완료되면, 이 서류를 바탕으로 TISI 담당자가 요약문(Summary)을 작성하고, 검토 부서별로 심사서류 및 승인서에 서명 후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3) 인증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 기간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약 40~50일이 소요되며, 시험기관의 일정 및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인증은 TISI 인증 신청을 한 태국 수입업자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인증받은 바이어를 통해서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태국의 여러 수입업체에 수출하고 싶으시다면, 각 태국 바이어들 모두가 TISI에 해당 제품을 신청하여 인증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태국 산업표준원(<https://www.tisi.go.th>)에서 참조하시길 바라며, 인증 관련 TISI 담당 부서는 Certification Division입니다.

**전화:** (+66) 2-202-3348, (+66) 2-202-3542

**이메일:** thaistan@tisi.go.th

# 25 현지법인 법인장 변경 절차

**Q.** 태국에 법인장을 새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장 변경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강진규 전문위원

태국에서의 법인장은 공식적인 서류의 서명권자(Authorized Signer)를 의미합니다. 법인장은 법인의 금융거래, 세금 신고 및 납부, 그리고 상거래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법인장이 새로 파견될 시는 법인장의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해야 할  
태국 기관과  
기관별 신고 내용

- (1) 사업개발국(DBD, 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 ① 등기이사 변경 신고
  - ② 주주 변경 신고(주주도 변경될 경우)
- (2) 세무국(RD, Revenue Department)
  - 납세자 변경 신고

기관별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 (1) 사업개발국
  - ① 등기이사 변경 신고
    - 주주 회의 또는 임원 회의를 거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당일 처리됩니다.
  - ② 주주 변경 신고(주주도 변경될 경우)
    - 사업개발국에 제출하여 신고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당일 처리됩니다. 주주 변경 신고는 정해진 신고 의무기간이 없습니다.
- (2) 세무국
  - ① 납세자 변경 신고
    - 법인장이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에 내방하여 납세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관별 등록 절차 및 준비서류

- 법인장 신분증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원본, 사본)
- 세무국 양식의 신청서
- 법인 등기부 등본(6개월 이내 발급)

### ② 체류 기간 연장

새로 부임하는 법인장이 한국에서 취업비자(NON-B)를 받고 태국에 신규 입국하는 경우 WP3(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사유 제출 시 기한 연장 가능) 고용노동국에 내방하여 노동허가증(워크 퍼밋)을 신청하고, 노동 허가 기간에 맞춰 취업비자 만료 전(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관할 이민국에 내방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이민국의 경우 관할 사무소가 방콕이면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 필요  
([http://203.151.166.132/immigrant\\_queue/booking/](http://203.151.166.132/immigrant_queue/booking/))

#### \* 노동허가증 신청 시 기본 서류

- 신청서, 고용확인서, 신분증(여권), 최종학력 증빙서류, 이력서
- 3X4cm 사진 3장(6개월 내 촬영, 정면 사진, 모자와 안경 모두 벗고 촬영)
- 건강진단서(한 달 이내 발급)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고용주 신분증

보다 실무적인 상담은 유관 기관 또는 현지 자문업체를 통해 받아보길 권합니다.

필리핀 | 무역 실무

# 26 단감 수출 절차 및 수출대금 회수 방안

**Q.** 필리핀 바이어로부터 단감 수출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의뢰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으로 단감 수출이 가능한지요? 또 바이어가 결제조건으로 사전 및 사후 송금방식을 제안하여 수출대금 회수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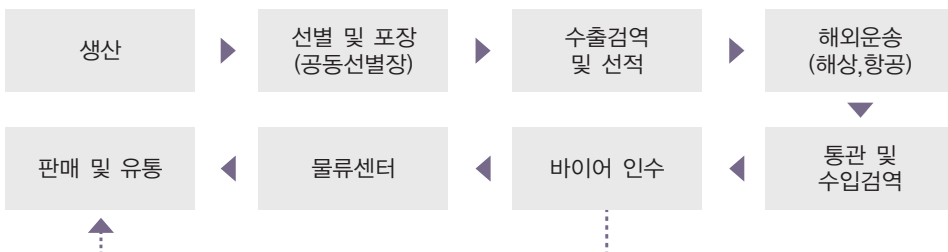
**A.** 이성진 전문위원

**필리핀  
신선 농산물 수출**

필리핀은 자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농업 및 축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을 두고 있지만, 단감은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일류의 경우 수입 바이어는 필리핀 정부(식물 산업국)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자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 현지(수입자)에 보내주어야 합니다.

- 기본적인 서류는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 선하증권(B/L), 원산지 증명서(AK C/O) 등이 필요합니다.
- 과일이 필리핀에 도착하면 병해충 및 잔류농약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통관이 되며, 수입 허가서나 식물 검사합격증명서가 없는 선적분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서와 식물 검사합격증을 제출할 때까지 세관에 억류됩니다.
-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신선과일 및  
채소의 일반적  
수출 절차**



---

**aT(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보험 안내**

- 대금결제 조건상 사후 송금 부분의 미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수출 보험에 가입
-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 보험료의 90%까지 aT에서 지원하며 기본계약과 선택계약 구성되어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 \* 보상금액: 책임 금액 범위 내
  - \* 가입 방법: 기본위험(대금 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사항
- 농식품 수출지원 기관인 aT에서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 검색창에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 검색

필리핀 | 무역 실무

# 27 가공식품 인증 절차

**Q.** 필리핀으로 배즙, 도라지즙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수출 시 필요한 인증과 필리핀의 수입 제도가 궁금합니다.

**A.** 이성진 전문위원

필리핀은 일부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식품 수입을 위해 수입허가서, 등록증명서,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가공식품 수입업체는 필리핀 FDA 절차를 준수하여 영업허가증 (LTO, License to Operate)를 발급받고, 제품등록(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을 완료해야 합니다.

**식품 수입 절차**

수입자는 관련 필리핀 기관으로부터 수입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허가받은 등록된 개인 또는 회사만이 식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가공식품의 경우는 FDA에서 LTO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LTO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이후 갱신된 LTO는 5년간 유효합니다.

**(1) 영업허가증(LTO, License To Operate) 발급**

- LTO 발급 절차는 필리핀 식품의약청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da.gov.ph>)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청 공식 홈페이지(<https://www.fda.gov.ph>)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파일의 모든 항목에 가급적 빈칸 없이 작성하여 담당 부서로 송부하면 서류 제출 일정 안내문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통합신청서, 업체등록증명서, 업체 소재지 증명서, 제품 리스트, 위치도, 제품 제조업체의 평면도 및 배치도 등

\* 발급 예상 소요 기간: 약 60일

**(2) 제품등록(CPR,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 수입할 수 있는 품목 여부를 파악하고, 상품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수입 가공식품은 그 제품이 안전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청 공식 홈페이지에 제품등록을 해야 현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 수입 절차

-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는 초기 수입 이전에 FDA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필리핀에 소재한 기업 또는 사업장만 상품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발급 시 1년간 유효하며, 갱신한 뒤에는 5년간 유효합니다.

**가공식품 등록에 필요한 서류**

- 통합신청서 : 필리핀 식약청(FDA) 서식
- 제품 라벨
- 제품 사진
- 기술, 영양, 의학, 건강 관련 주장을 입증할 서류:  
예) 기술 또는 영양 관련 영양보고서, 시장조사 자료, 과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등
-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수출업체가 제공
- 해외대리점 계약서(Foreign Agency Agreement): 수출업체가 제공
- 대리점 임명장(Appointment Letter): 수출업체가 제공
- 판매대리권 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수출업체가 제공
- 우리나라 식약처 등 당국이 발행한 위생/검역 관련 서류: 수출업체가 제공
  - 제조업체 GMP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인증서
  - 검역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 ISO 22000 인증서 또는 HACCP
  -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위험도에 따른 가공식품 분류**

카테고리별 소요 기간과 비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카테고리 1(저위험)	카테고리 2(중·고위험)
빵 및 관련 제품, 사탕 및 과자, 비알코올 음료 및 음료 믹스, 커피, 차, 소스, 드레싱, 젤라틴, 유제품, 수산물, 과일, 채소, 포장 육류제품, 면, 기름, 지방, 스낵, 시리얼, 설탕 및 관련 제품	알코올음료, 식품 보조제, 차, 병에 담긴 생수,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특별식이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필리핀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식품
등록에 3~4주 소요	등록에 3~6개월 소요

**(3) 위생증명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해당 국가의 규정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 식품 수입 절차

### (4) 라벨링 규정

필리핀으로 식품 수출 시 품질 및 안전 규정과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필리핀의 식품 규정은 일반적으로 코덱스(CODEX) 기준에 따르며 최종소비자가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위치에 표기해야 하고 영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 **제품명:**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하고 식품의 본질을 나타내야 함
- **상품명 혹은 상표:** 등록된 상표명과 동일한 명칭을 기재
- **성분 목록:** 높은 함량 순으로 기재
- **중량:** 실 중량 표기
- **업체명 및 주소:** 제조업체, 포장업체,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표기
- **제품번호:** 제품 포장 용기에 양각 혹은 영구적인 형태로 표기
- **보관조건:** 실온 보관 이외의 경우 보관조건을 명시
- **유통기한:** '일/월/연'으로 표기하며 날짜와 연도는 숫자, 월은 문자로 표기
- **알레르기 정보:** 성분 목록 아래에 기재
- **섭취 방법:** 식품의 적절한 섭취법에 대하여 표기
- **영양 정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칼로리를 표의 형태로 표기

### (5) 유의 사항

- 제품 신고부터 최종 승인까지 전체 소요 기간은 전산화 도입으로 기존보다는 다소 단축됐으나, 여전히 명시된 기간보다 더 소요됩니다.
- 제품 신고 서류는 현지 수입업자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으나, 최근 승인 여부 결정에 있어 식약청의 검토가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성 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수출기업 입장에서도 직접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식약청 검토 시 수입업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LTO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지 에이전트 선정 시 가급적 이미 거래 허가를 받은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28 의료기기(체외진단기) 수출 절차 및 규정

**Q.** 필리핀으로 의료기기(체외진단기)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수출 시 필요한 절차나 규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천정원 전문위원

**의료기기  
관련 규정**

필리핀에 의료기기 수출 시, 모든 수입자는 현지 식약청(FDA) Act of 2009 법에 의거, 제품 판매전 필리핀 식약청에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품목별로 개별 수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체외진단기의 경우 Class A 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CMDN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CMD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Class A 의료기기 신고 증명서)

**의료기기  
등급 분류**

- 의료기기 등급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Class A부터 가장 위험도가 높은 Class D로 구분합니다.
- Class A는 FDA에 신고(Notification)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제품에 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 Class B~D의 경우,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Registration)을 신청하면 FDA의 검토를 거쳐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규제 개요**

- 제품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영업허가증(LTO, License to Operate)를 보유한 필리핀 현지업체가 필요하며, 필리핀 국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현지 유통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수입, 허가,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료기기는 각 모델/브랜드마다 개별적으로 등록하고, 등록 증명서 CPR(Certification of Registration)에 기재되어있는 유효기간 내에는 같은 모델의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때 해당 증명서의 사본으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별  
인증서 취득 구분**

등록 대상 의료기기	CLASS	등록 비대상 의료기기
CMDN	A	CMDL
CMDR	B	CMDN
CMDR	C	CMDN
CMDR	D	CMDN

\* CMD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Notification(Class A 의료기기 신고 증명서)

\* CMDR: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Registration(Class C, B, D 의료기기 등록증명서)

\* CMDL :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 Listing(연구, 임상, 전시 등 비판매용 의료기기 등재증명서)

**의료기기 영업허가증  
(LTO) 필요 서류  
[공통서류]**

- 공증된 신청서 및 별도 서약서
- 공증된 서약서 소프트카피(DVD-R 사용)
- 수입 희망 의료기기 명단
- 약사협회 증명서, 전문의 신분증, FDA 약/의료기기 아울렛 설립 세미나 수료증 사본
- 사무실, 창고 위치 및 도면
-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DTI) 또는 법인(SEC)
- 회사 대표, 약사 ID 사진
-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의료기기 등록 시  
제출 서류**

- 제조업체/무역업체/유통업체의 신청서
- 제조업체/무역업체/수입업체/도매업체의 유효한 사업허가증(LTO)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 대리인의 사업허가증)
- 원산지 국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고 해당 국가 필리핀 영사관에서 인증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등록 증명서
- 제조업체의 제조국 내 기업/법인등록 증명서 및 ISO(GMP) 증명서
- 제조업체와 필리핀 현지의 무역/유통/수입업체 간 체결된 계약 증명서
- 제품의 소매가(제안)

# 29

## 도급형태 철도 프로젝트

**Q.** 필리핀에 도급사업 형식으로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싶습니다. 건설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A. 강진규 전문위원

필리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하고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일반 건설면허, 특별 건설면허로 분류되므로 프로젝트 성격에 맞는 면허 신청이 필요합니다.

#### 건설면허 종류

- 특별 건설면허(Special License):

특정한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Project Owner, 컨소시엄, 조인트벤처(JV), 외국 건설사에 발급하는 특별건설면허입니다. 외국 건설사의 경우 외국이나, 국제기구 자금 투입으로 필리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한 국제입찰 프로젝트나 BOT 공사 수행 기업에 발급합니다.

- 일반 건설면허(Regular License):

민간에서 발주하는 외국인 지분 40% 이하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발급합니다.

#### 필리핀 건설투자 (Inbound Investments) 관련법

##### (1) 필리핀 건설 투자에 관한 기본법

- 일반적으로 건설 활동을 수행하려는 모든 외국 회사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 공화국 특별법인 제7042호(외국인 투자법) 및 4566호(건설 인허가법)를 준수해야 합니다.

필리핀 건설투자  
(Inbound  
Investments)  
관련법

\* SEC 등록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신규 국내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외국 법인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 또는 파트너십</li> <li>• 은행 예금증명서</li> <li>• 본인 확인 전표</li> <li>• 외국인 가입자의 ACR/ICR, SIRV, Visa #13</li> <li>•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송금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문 정관/파트너십 공증본 (필요한 경우 번역)</li> <li>• 사무소 설치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서 등본</li> <li>• 본인 확인서</li> <li>• 감사받은 직전 연도 재무제표</li> <li>• 국내 송금 증명서</li> <li>• 국방부 또는 필리핀 경찰의 허가서 (외국 기업이 방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li> <li>• 투자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증명서 (첨단 기술 보유한 납입 자본금이 500,000\$(USD) 미만인 국내 시장 기업에 해당)</li> </ul>

- BOT(Build-Operate-Transfer) 및 기타 유사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법 Republic Act 제7718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BOT: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운영까지 맡는  
수주 방식

(2) 필리핀 외국인투자법(공화국법 제 7042호)

- 필리핀에 대한 모든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에 대한 절차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현지 자금이 지원되는 공공 공사의 건설 및 수리 관련 분야에 진출하면 외국인 지분 참여는 25%로 제한

필리핀 건설투자  
(Inbound  
Investments)  
관련법

- ② 다자간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공공부문 프로젝트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 참여가 허용

(3) PCAB 라이선스

‘계약자면허법(P.D. 4566)’에 따라 필리핀에서 건설 활동을 수행하려는 모든 건설 회사 경우, 필리핀 계약자인증위원회(PCAB)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 PCAB 계약자의 라이선스 유형

① 일반 라이선스

최소 60%의 필리핀 Local 업체의 지분 참여가 필요하며 라이선스 사용자가 부여된 면허 종류의 분야 범위 내에서 허가된 기간만큼 활동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 라이선스

합작투자,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는 외국 기업에 발행됩니다. 단일 특정 사업/프로젝트의 건설 및 범위 내에서만 라이선스가 발급됩니다.

# 30 화장품 중복 등록

**Q.**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화장품 중복 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강진규 전문위원

말레이시아는 유통 허가만 있다면 화장품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레이시아는 화장품 유통 '사전등록(Notific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전등록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화장품 유통 '사전등록' 제도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화장품 유통 '사전등록(Notific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기업은 먼저 현지 등록을 진행할 파트너를 발굴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 등록기업 명의로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NPRA,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에 제품을 '사전등록'을 해야 현지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현지 등록 파트너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추후 동일한 제품에 대해 다른 에이전트를 찾을 시 다시 사전등록을 하면 수입 유통이 가능합니다.

제품 사전등록을 위해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위임장(LoA, Letter of Authorization)', 제품 성분분석서, 그리고 제품 생산업체가 GMP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통관 시에는 '사전등록증'이 필수 첨부 서류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 가능합니다.

위임장에는 등록자(CNH)가 제품 소유자의 제품 혹은 브랜드를 NPRA에 신고 및 등록하고, 또 관련 사항을 책임지도록 허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화장품 유통  
'사전등록' 제도

## 위임장(LOA) 샘플

<b>Company Letter Head</b>	
-----	
<b>Company Address</b>	
_____	
_____	
_____	
Date: DD/MM/YYYY	
-----	
<b>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b>	
Lot, 36, Jalan Universiti, 46200, Petaling Jaya, SELANGOR	
Dear Sir/ Madam,	
LETTER OF AUTHORIZATION	
I hereby authorize our organizational personnel, Ms./Mr. _____(full name)____, IC/Passport : _____(NRIC/Passport Number)____, designation _____(personnel's designation)____ to act on behalf of company _____(company name)____ to apply Quest 3+ USB Token and he/she shall be also acting on behalf of the company for all transaction pertaining to product registration/cosmetic notification via Quest 3+ system.	
Thank you.	
Sincerely,	
_____(hand signature)_____	
<b>NAME:</b>	
<b>Designation:</b>	
Company stamp:	

### ※ 참고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

(<https://www.npra.gov.my/index.php/en/cosmetic-main-page.html>)

Tel: (+60)3-78835400 (ext 5522)

Email: nik@npra.gov.my

말레이시아 | 무역 실무

# 31 소프트웨어 수출 세관 신고 절차 및 실적 인정 방법

**Q.** 말레이시아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싶습니다. 수출 시 세관 신고 절차와 수출실적 인정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강진규 전문위원

**소프트웨어  
수출 방법**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바로 전송하는 방법, USB 혹은 CD에 담아 개인이 휴대하는 방법, 그리고 DHL·FEDEX·UPS 등 특별 수송 업체를 통해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송할 때는 별도의 수출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세관에서 수출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할 때는 상업송장(수출자가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업 고유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실적은 자동으로 집계되어 한국무역협회 회원 서비스팀(02-6000-533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휴대할 경우,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 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별 수송 업체를 통하여 보낼 때는 특별 수송 업체에 물품 운송을 맡기기 전에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 발송하였음을 세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의  
수출실적 인정**

온라인으로 바로 소프트웨어를 전송하더라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소프트웨어,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등 전자적 형태(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 서적, 데이터베이스)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비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 한국 무역협회 회원 서비스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급한 수출입 확인서를 주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제출하여 외화입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수출입 확인을 받기

온라인 소프트웨어의  
수출실적 인정

위해서는 수출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계약서(거래 및  
인수도 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입실적 인정 시점은 외국환은행 입금일이나 지급일이며 수출입  
증명서는 수출입확인서에 따라 거래 외국환은행이 발급합니다.

# 32 수입 관세 및 통관제도

**Q.** 나라마다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수입 관세와 통관제도가 궁금합니다.

**A.** 천정원 전문위원

## 수입 관세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과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 Act),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싱가פור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개방된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수입세\_Customs Duty, 소비세\_Excise Duty)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품목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 ※관세(수입세, 소비세) 부과 품목

- 주류(intoxicating liquors)
- 담배 제품(tobacco products)
- 차량(motor vehicles)
-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대신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GST(Goods&Service Tax)라는 상품 및 서비스세 7%가 부과되며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을 통하여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Singapore Post Centre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밟게 되며, 400\$(SGD) 미만의 물품은 상품 및 서비스세 GST(Goods&Service Tax)도 면제됩니다.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품목별 세율과 내용 참고 사이트  
싱가포르 관세청(<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importing-goods/import-procedures>)

참고로 이 리스트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리스트에 명기되지 않은 품목은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싱가포르 수입 통관절차

싱가포르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 (1) 물품 도착 및 수입 신고 전 준비 요구 사항

-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IN Permit(통제/비통제 상품의 수입 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합니다.
- 특정 수입제한 품목(Controlled Goods)은 해당 물품 수입 전 관련기관에 허가/라이선스 등을 받아야 합니다.
- 특정 첨단 기술(High-technology) 제품의 경우, 수출국의 수출 제한 규정에 따르며 이 경우 수출자는 싱가포르 수입자에게 ICDV(import Certificate and Delivery Verification,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특별 수입 허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ICDV가 필요한 물품은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싱가포르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 (2) 수입 신고 방법 및 제출 서류

- 수입 신고서는 'TradeNet(무역자동화망)'이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컨테이너 화물(Containerized cargo)과 비컨테이너 화물(Conventional Cargo)로 구분되어 수입 신고가 되며, 증빙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기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수입 신고 시에 컨테이너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세 납부

- 관세는 관세 납부대상(dutiable goods)만 내며,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 관세 대상 물품은 종가세(ad valorem) 또는 종량세(specific)가 적용됩니다.
- 관세 등 조세는 inter-Bank GIRO(IBG)를 통해서 싱가포르 세관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물품 검사  
및 반출**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서류(Paperless) 신고 및 신고 수리되어 반출됩니다.
- 검사 대상이 된 수입 물품은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물품 반출이 허가됩니다.
- 싱가포르로 수출하는 종합인증 우수업체(AEO)는 수출 시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AEO 인증번호를 싱가포르 관세청에 통보하면 검사 비율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33 치과용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Q.** 임플란트 등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사입니다. 치과용 의료기기를 싱가포르로 수출할 때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 강진규 전문위원

싱가포르의 의료기기는 보건과학청(HSA)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기 전 HSA에 제품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수입·도매·제조업자는 싱가포르 의료기기정보통신 시스템(MEDICS, Medical Device In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을 통해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 MEDICS 라이선스 신청 (Dealer's License)

- 수입업자, 도매업자, 제조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은 아래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ISO 13485 인증서
- (2) GDPMDS 인증서 또는 GDPMDS 면제 선언서(부록 1)
- (3) QMS 적합성 선언서(부록 5)

\*GDPMDS(Good Distribution Practices for Medical Devices):

의료기기에 대한 우수 유통 관리 표준

\*QMS(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관리시스템

\*제조업자 라이선스의 경우 GDPMDS 인증서 또는 GDPMDS 면제 선언서 제외 모든 라이선스는 승인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발급 기간은 약 10일이며, 최초 신청 수수료 및 갱신 비용은 1030\$(SGD, 원화 약 90만 원)입니다.

### 의료기기 제품 등록 (Registration)

이후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대장(SMDR, Singapore Medical Device Regulation)을 통해 제품등록을 하게 됩니다. 의료기기는 위험도에 따라 Class A, B, C, D 4가지로 나뉘며 가장 위험도가 낮은 A군 제품은 등록이 면제되기도 합니다.(살균 제품 제외) 또한 만약 제품이 싱가포르 보건 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이 인정하는 5개의 해외 인증 기관(미국의 FDA, 캐나다의 HC, 유럽연합의 NB, 일본의 후생노동성, 호주의 TGA)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약식평가절차(Quicker Evaluation Routes)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제품 등록  
(Registration)

의료기기 등록 준비 서류

- ① 신청자 정보(Applicant Info)
- ② 제품 정보(Device Info)
- ③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Device Details)
- ④ 등급별 요구되는 심사서류
- ⑤ 해외참조기관(Reference Agency) 정보(Details of Reference Agency)
- ⑥ 평가 절차(Evaluation Route)\*

\*의료기기 평가 절차는 전체 평가(Full Evaluation Route), 요약 평가(Abridged Evaluation Route), EBR 평가(Expedited Class B Registration Evaluation Route), IBR 평가(Immediate Class B Registration(IBR) Evaluation Route)로 나뉘며, 의료기기 종류에 따라 평가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인증 대행 기관의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www.ktr.or.kr>)



# 34 한국산 중고 버스 수출

**Q.** 라오스로 한국산 중고 버스 수출 판로를 개척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A.** 천정원 전문위원

**라오스의 수입 중고차 수입 제한**

현재로서는 중고 버스 수출은 불가능합니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하반기에 추후 WTO 가입과 2012년 개최 예정인 ASEM 등 주요 행사를 앞두고 중고 버스를 포함한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는 초강경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오염 유발 방지, WTO 가입 준비(2013년 최종적으로 가입), 수입 중고 차량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반응 해소였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2011년 10월 중고 자동차 수입통관 금지 조치를 시행하여, 특히 정부 특별 허가로 그동안 허가받은 차량 중에서도 아직 반입되지 않은 잔여 차량에 대한 허가를 전면 취소하고 하이브리드카와 NGV, LPG 등의 수입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고차 수입을 전면 중단한 조치로 세관이 보관하고 있는 중고 차량도 수입 원산지로 반송 조치하고 기간 내 미반송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압류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러한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의 배경에는 궁극적으로는 WTO 가입을 통한 국가 위상의 제고가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나아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중고 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인적·경제적 손실을 줄여보자는 계산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라오스에서 신차와 중고차 등이 증가하는 데 따른 차량정체 해소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 35 EU 무관세 혜택(EBA) 철회

**Q.** 2020년 8월 12일 이후 EU의 캄보디아에 대한 무관세 혜택(EBA) 일부 철회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망과 한국기업에의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강진규 전문위원

**EBA 원칙이란**

EBA 원칙(Everything But Arm)은 EU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 무역 조치를 의미합니다. UN이 지정한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기, 탄약 등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와 수입 쿼터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EU는 2020년 초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권 탄압을 이유로 개발도상국의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EBA혜택 일부를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12일부터 섬유와 신발 등 의류와 설탕 등 20%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WTO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EU는 캄보디아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 가운데 대(對) EU 수출 비중은 45%, 금액은 약 54억 유로입니다.

**EBA 철회 일부 효력 발생**

EBA 철회 관련하여 EU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캄보디아 정부와 민간 협회 및 단체들이 큰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2020년 8월 12일부로 부분 철회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EU는 최종 결정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캄보디아가 인권과 노동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올 경우 EBA 특혜의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지 업체들로서는 EU의 규제가 조속히 해제되어 EBA 무관세 혜택을 다시 누리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움직임이나 알려진 바 없으므로 당장은 '재협상을 통해 무관세 특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사태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 특혜 철회 품목 및 관세율

HS 코드	품명	관세율
1212 93	사탕수수	4.60EUR / 100 kg
4201 00	동물용 마구	2.7%
4202	트렁크, 슈트케이스, 가방 등	2.7%~9.7%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족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0~9.0%
4205 00	그 밖의 가죽제품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제품3)	2.0~3.0%
4206 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또는 건韃의 제품	1.7%
6103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0%
6103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103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 • 브리프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09	티셔츠 • 싱글리트(singlet)와 그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12.0%
6115 1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8.0%~12.0%
6115 21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2.0%
6115 22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12.0%
6115 2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115 95	면으로 만든 것	12.0%
6115 96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115 9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03 41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12.0%
6203 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
6203 4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12.0%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 언더팬츠 • 브리프(brief) • 나이트셔츠 • 파자마 • 목욕용 가운 •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12.0%
6211 32	면으로 만든 것	12.0%
6211 3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0%
6211 39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2.0%
6211 42	면으로 만든 것	12.0%
6211 43	인조섬유로 만든 것	12.0%



II

# 신북방 지역 비즈니스 주요 상담 사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몽골

# 36 화장품 인증 및 인허가 절차

**Q.** 여러 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로 이번에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러시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인증이나 인허가 절차와 인허가 관련 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 김동준 전문위원

러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

- 회원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 법적 성격: 회원국 간에는 수출입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역외 국가에는 공동의 대외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 연합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향수 및 화장품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기술규정(TP TC 009/2011)이 적용되며 해당 규정은 화장품의 정의와 범주, 안전성 요건, 라벨링, 성분 규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제력이 있는 법률적인 것으로 회원국 전역에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의 화장품 정의와 허가 및 금지 성분은 유럽 화장품 규정인 Regulation (EC) No.1223/2009과 유사합니다).

EAEU의 5개 국가에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2012년 7월 1일 실시된 관세동맹 기술규정(TP TC 009/2011)에 따라 EAC(Eurasia Conformity) 적합성 평가 후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또는 적합성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을 해야 하며 제품에는 EAC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국가등록과 적합성 선언은 하나의 국가에서 진행하면 나머지 관세 동맹국 모두에서 통용됩니다.

### 국가 등록 (State Registration)

미백 제품과 같은 특정 유형의 제품은 시장 출시 전(유라시아 연방 세관 통관 전)에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을 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등록된 법인(수출입 계약서상의 현지 수입업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회사가 수입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가등록 후에 국가 등록증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국가 등록 (State Registration)

### ※ 러시아 국가등록 담당 기관

연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복지 감독국(Rospotrebnadzor)  
<https://www.rospotrebnadzor.ru/en>

### ※ 러시아 공인 인증기관 및 시험 기관 확인(해당 사이트에서 기관 분류 선택)

<https://portal.eaeunion.org/sites/commonprocesses/ru-ru/Pages/ConformityAuthorityDetails.aspx>

### 국가등록이 필요한 화장품 목록

#### ※ 관세동맹 기술 규정(TP TC 009/2011) 부속서 12번에 수록

1. 인공 태닝용 화장품
2. 피부 미백용 화장품
3. 문신용 화장품(피부에 주입하지 않고, 피부에 패턴을 그리는 화장품)
4. 여성 청결제 화장품
5. 유해 인자의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용도의 화장품  
(예: 자외선차단제)
6. 어린이용 화장품(14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제품)
7. 화학적 염색, 표백, 모발을 강조하기 위한 화장품
8. 파마와 헤어 스트레이트를 위한 화장품
9.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
10. 제모용 화장품
11. 필링제
12. 불소가 0.15% 이상 함유된 구강 위생제품(구강 위생용 액상 제품은 0.05% 이상)
13. 과산화수소와 기타 과산화수소  
 관련 성분(0.1~6.0%의 과산화수소를 함유하는 과산화요소 및 과산화아연 포함)이 들어있는 치아미백제품

### 국가등록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등록 신청서
- 농도 및 질량 비율이 있는 전 성분 리스트
- 제품이 모든 품질 요구 사항에 충족한다는 제조업체 서명이 있는 품질 인증서 또는 제조업체의 서면 확인(Letter 형태)
- 제품의 관능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긴 문서
- 나노입자를 사용한 경우 입자의 화학적 조성과 크기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
- 패키지 라벨링 샘플(내지 포함)
- 사용 시 특별한 주의 사항 및 사용지침에 대한 정보
- 시험 성적서(TP TC 009/2011 규정에서 요구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공인 시험소 성적서)
- GMP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 라벨에 표시된 기능을 증명하는 문서

**적합성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1) 적합성선언 절차**

- 유라시아 경제연합 내에서 승인된 시험소에서 제품 시험(적합성 평가)을 진행
- 유라시아 경제연합 공인 인증기관에 제품 시험 성적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자기 적합성선언(Self-Declaration) 등록

※ 자기 적합성 주체(신청 주체)는 관세 동맹국 내에 주소지가 있는 법인이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또는 해당 관세 동맹국 공식 언어로 작성해야 함. 유효기간은 등록 후 5년임

**(2) 적합성선언 필요 서류 목록**

- 농도 및 질량 비율이 있는 전 성분 리스트
- 제품의 관능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담긴 문서
- 시험 성적서(TP TC 009/2011 규정에서 요구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공인 시험소 성적서)
- 패키지 라벨링 샘플(내지 포함)
- 라벨에 표시된 기능을 증명하는 문서

※ **참고** 해외 화장품 인허가 관련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http://www.kcii.re.kr>)**

\*정보 검색 방법:

사이트에 접속 ➡ 서비스 바로가기 중 '온라인 수출 가이드북' 선택 ➡ 메뉴에서 해당 국가 선택 ➡ 정보 확인

**(2) 글로벌 규제조치 지원센터(<http://helpecosmetic.or.kr>)**

\*정보 검색 방법:

사이트에 접속 ➡ 메뉴에서 '글로벌 인허가 규제정보' 선택 ➡ 중국 및 해외법령 중 선택 ➡ 정보 확인



# 37 떡볶이 등 식품 인증 절차

**Q.** 대표적인 한류 식품이고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떡볶이를 러시아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러시아로 떡볶이를 수출할 때 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이성진 전문위원

러시아(유라시아  
경제연합, EAEU)의  
TR-CU 인증

떡볶이 제품을 러시아로 판매할 시 꼭 취득해야 하는 강제 인증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가입국으로 해당 국가들과 공통된 인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로 떡볶이 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TR-CU(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인증을 필수로 획득해야 하고 TR-CU 인증서에는 EAC(Eurasian Conformity) 마크가 부착됩니다. 또한 TR-CU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생산 안전 관련 인증인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TR-CU 인증은 러시아를 포함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통합인증입니다. 인증기관의 경우 각국에 다양한 기관이 있으므로 업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증 신청자는 제품의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국가 내 러시아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러시아 대리인 또는 제조자 현지 법인이어야 합니다.

# 38 의료기기 인증 및 등록 절차

**Q.** 러시아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려 합니다. 한국 업체가 직접 의료기기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사를 통해 제품등록 후 거래를 중지하거나 지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문영준 전문위원

의료기기의 경우 러시아 현지 수입사, 유통사, 에이전트, 현지법인 등이 제품을 러시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제품만이 수입, 통관, 유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사를 통해 등록 인증이 발급되었으면 발급받은 곳을 통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거래 중지, 기타 사유로 변경하시려면,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현지법인이나 수입상, 에이전트 등을 통해서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지법인이 아닌 수입사·유통사·현지 에이전트사 등을 통하여 등록할 경우, 한 번 등록이 되면 변경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진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러시아 의료기기 등록 절차

### (1) 의료기기 인증제도

- 모든 의료기기는 정부 등록 및 인증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의료기기는 CU 인증을 필수로 취득해야 하며,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수입·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 (2) CU 인증

- 2014년 2월 이후 GOST-R 인증 대신 CU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CU 인증제도는 내용에 있어서 GOST-R과 대체로 동일하지만, EAEU 5개국(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통용되는 강제·자율 인증제도입니다.
- 2021년 말까지는 EAEU 5개국 각국의 개별 등록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EAEU 통합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러시아 의료기기 등록 절차

### (3) GOST-R과 CU 인증 비교

변경내용	GOST-R	CU
신청자	제조사 혹은 수출자 혹은 수입자 모두 가능	러시아 수입자 혹은 제조자 현지법인(지사)
준비서류	영어문서 가능	러시아어로 작성된 문서
<b>소요 기간</b>	<b>약 1~2주</b>	<b>약 1~2개월</b>
공장심사 (1년 인증 이상)	제품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체	필수(샘플 테스트 추가)
공장심사 (1년 인증 이상)	One shipment, Serial 인증(1년&3년)	One shipment, Serial 인증(1년, 3년, 5년)

러시아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은 없으나 공인된 여러 인증 대행 발급기관을 두어 시험 및 인증발급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증발급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통상 바이어나 인증 전문 업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증 비용 부담 주체는 수출자(사)와 수입자(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4) 등록 절차

- 2013년 1월부터 신규 등록 절차(Decree No.1416)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 ① 제조사는 의료기기 샘플을 러시아 검증(Test) 연구소로 보냄
- ② 제조사 또는 공식 대표사는 각종 실험 결과와 상품설명서를 포함한 제품 기술서(Technical dossier)를 Roszdravnadzor (감독국)에 송부 → Roszdravnadzor가 지정한 전문가는 임상시험 필요성 여부 검토 → 임상시험 필요성 제기 시 보건 사회발전부의 윤리위원회 승인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
- ③ 의료기기 안정성이 Roszdravnadzor에 의해 승인되면, 무기한 등록증이 발행됨과 동시에 연방 의료기기 품목 리스트에도 등재됨
- ④ 등록증 발행 후, 적합성검증(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발급을 위해 러시아 인증발급기관에 기술 의향서에 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DOC는 러시아 기업에만 발행됨.

\*\*등록 대리인 진행 방법: 러시아 의료기기 수입은 정부 인증서 보유 기업만 가능하므로 외국 제조사들은 정부 인증서 보유기업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러시아 의료기기  
등록 절차

(5) 필요 서류

- 신청서
- 제조/생산 대표자의 권한을 인증한 문서 사본
- 의료기기의 규제 관련 정보
- 제조/생산의 의료기기 기술 관련 문서
- 제조/생산의 의료기기 운영 지침서(의료기기에 같이 포장되는 사용자 설명서 등)
- 사용할 때 필요한 모든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포함한 의료기기 사진(최소 18X24cm)
- 의료기기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다는 문서
- 신체접촉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한해 독성 검사확인서
- 계측기구를 위한 검사확인서 (연방 보건부의 계측기구 통일성을 따르는 기구일 경우)
- 제출서류목록표
- 의료기기의 의학적 효율성 및 안정성(가능하다면 첨부)
- 의학 검증을 위해 필요한 계획 및 보조자료(가능하다면 첨부)
- 의학 검증을 위해 필요한 계획 및 보조자료(가능하다면 첨부)

\*상기 문서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면 러시아어로 공증을 거쳐야 함

(7) 안전성 검사의 세금 및 등록 수수료

분류	분류기준	품목군	세금	등록 수수료
Class 1	위험성 낮음	현미경, 의료측정기, 청각 테스트기 등	45,000루블	7,000루블
Class 2a	위험성 중간	청력 측정기, 실험기기, 폐활량 기계 등	65,000루블	
Class 2b	위험성 중상위	심전계, 맥박계, 세동제거기 등	85,000루블	
Class 3	위험성 최상위	임플란트, 관내 인공 삽입용 기기, 방산 종양학 관련 등	115,000루블	

(8) 의료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 2015년 9월 30일, 의료제품에 대한 영업 및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일부 수정(2002년 최초 법령 발효)했습니다.
- 의료기기 수입 관세는 품목에 따라 0~7%까지 다양합니다.

# 39 EAC 인증 취득 후 복수 바이어 거래

**Q.** EAC 인증을 받은 후 러시아에 있는 다른 바이어와도 거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바이어와 별도의 합의를 체결해야 할까요?

또한 파트너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기 인증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파트너사를 바꾸고 싶은데 인증 등록을 새로 해야 하나요?

## A. 문영준 전문위원

### 복수 바이어 거래

EAC 인증서에는 수입업체(러시아 기업)와 제조사(한국기업) 이름이 기재됩니다. 기존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수입업체 외에 다른 바이어를 통하여 수출할 경우, 인증서를 보유한 기존 바이어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예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수입업체가 위임장을 써주지 않는다면 다른 바이어를 통한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EAC 인증서 상의 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다른 경우(위임장에 근거하여 수입항에서 통관할 경우)에 러시아 세관에서 통관을 허용해 줄 때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통관이 불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관상 리스크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바이어와 인증서의 유효범위가 One Shipment(해당 계약분)로 제한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의료기기 복수 인증 등록

파트너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의료기기 현지 인증 등록을 진행할 경우, 인증추득자(현지 회사) 외에는 타 기업이 인증등록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등록된 기업이 인증을 취소한다면, 해당 인증서에 기반한 영업을 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발급된 등록증을 다른 파트너사로 이양할 수 없으니 취소하게 하고, 인증 등록을 다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40 통관서류 및 인허가 절차

**Q.** 화장품과 식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통관서류 및 절차에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A. 문영준 전문위원

통관서류는 품목별, 세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제품별로 수입상 및 하역항의 전문 운송/포워딩 업체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송/포워딩업체 검색 방법: KOTRA 홈페이지 → 해외시장뉴스 → 국가 지역 정보 → 러시아 → 무역 → 통관 및 운송에서 검색 가능)

통관서류에 인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통관·유통이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EAC 인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통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목록	담당	서류	언어	구분
CIP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수출자	사본	영문	필수
보험증서 (Insurance Policy)	수출자	사본	영문	필수
제품설명서	수출자/수입자	사본	영문/노문	필수
수입신고서(GTD)	관세사	원본	노문	필수
DTS(Declaration of Customs Price)	관세사	원본	노문	필수
MBL 또는 RWBL(Railway Bill)	선사	원본	영문/노문	필수
세금송금증 (Bank Slip)	수입자	원본	노문	필수
외환거래허가증	수입자	사본	노문	필수
통관 위임장	수입자	사본	노문	필수
Price List	수출자	사본	영문	세관 요구시
수출신고 필증	수출자	사본	영문	세관 요구시
원산지 증명서	수출자	원본	영문	Lamp등 특정 제품
운송비용 내역서	운송사	사본	영문	FOB인 경우
인증서	수입자	공증 사본	노문	제품별 해당 인증 준비

# 41 미국의 對 러시아 경제제재

**Q.**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러시아의 경제제재, 무역 규제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은행에서 미국 제재리스트에 들어가서 송금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SSI 리스트는 무엇인지요?

**A.** 문영준 전문위원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으로 개시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 유럽,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제재를 통한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에 근거하여, 미국인이 아닌 외국 기업에도 적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SWIFT(미 달러화 기반 청산-결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의 금융기관 또는 한국이 거래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은 러시아인이나 러시아 기업이 거래상대방이거나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미국의 대(對) 러 제재 위반의 위험성을 들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  
제재리스트 목록

(1)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제재 관련 행정명령을 근거로 특별지정 제재대상자 목록(SDN List,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을 작성하여, SDN List 등재자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SDN 등재자와 미국 민간의 또는 SDN 등재자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 OFAC은 행정명령 제13662호에 근거하여 러시아의 금융 서비스, 에너지, 금속, 광업, 엔지니어링, 군수산업 관련 분야별 제재대상자 목록(SSI List, Sectorial Sanctions Identification List)을 공개하고, SSI 등재자와의 특정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따라 미국산 제품/소프트웨어의 대(對)러시아 수출 및 재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2 법인 설립 절차 및 유의 사항

**Q.** 카자흐스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법 상 100% 한국 지분을 투자하여 카자흐스탄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또한 카자흐스탄 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문영준 전문위원

100% 한국 지분 투자로 카자흐스탄에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진출 시 유한책임 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이 쉽기 때문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

카자흐스탄 진출 시 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 이유는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운영 측면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는 카자흐스탄 민사법(1994년 12월 27일 민사법 No 268-ХІІ), 기업가 법(2015년 10월 29일 No 375-V), 카자흐스탄 내 법인등록 및 외국 업체의 지사 및 대표 사무소 등기에 관한 법(1995년 4월 17일 No 2198)에 관한 법규(이하 법인 등기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립자의 상호, 현지법인 주소, 자본금(지사 및 대표 사무소 경우 제외), 출자 방식, 정관, 대표이사 임명 등을 결정 또는 의결함으로써 법인 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발생하며 이를 근거로 구비서류를 등기기관에 제출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에 관한 결정 및 의결 ➔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제출 ➔ 법인 등기 증빙서류 취득 ➔ 법인의 인감 제작 ➔ 법인의 은행 계좌 개설

• **법인 설립 문서 준비**

카자흐스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등기신청서, 법인 설립 결정서 또는 회의록, 정관, 외국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이 있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설립 절차

### • 법인 등기

설립자가 법인의 항시 집행기관이 소재한 등기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인 등기는 완료됩니다. 법인 등기는 등기서류를 제출 이후 영업일 5~7일 이내에 완료되며 등기기관은 등기 신청인(설립자)에게 법인 등기 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 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전자 정부 시스템으로 발급합니다.

### • 법인 인감 제작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기관으로부터 발급된 법인 등기 증명서,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회의록,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을 근거로 법인 인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법인 인감은 원형 인감이며 그 인감에는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기재됩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인감에 회사 로고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 은행 계좌 개설

법인 설립 및 인감 제작이 완료된 후 회사는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법인의 등기증명서
- ② 정관(사본)
- ③ 법인 설립 결정서 또는 회의록
- ④ 법인 대표이사 취임 명령서
- ⑤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 ⑥ 외국 법인 등기부등본
- ⑦ 외국 법인의 정관
- ⑧ 외국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 ⑨ 법인 인감

단,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계좌 개설은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 법인 설립 절차의 대행업체 진행

현지 법인 설립은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 설립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현지 법무법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7-777) 705 8822 / (+7-701) 973 5554 /  
**AK Group** (+7-727) 390 7301 akgroup@akgroup.kr /  
<https://www.akgroup.kr>

---

**BLJ 로펌** (+7-701) 760 8028 / jjs.mgimo@gmail.com

---

# 43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Q.** 우크라이나 업체와 의료기기 수출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의료기기 인허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R-Gost(러시아 의료기기 인증)가 우크라이나에서 통용이 되는지요? 안된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어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지와 CE/FDA와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 A. 문영준 전문위원

EAEU(유라시아경제동맹) 국가에서는 R-Gost가 EAC 인증(유라시아 경제동맹 인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EAEU 미가입국가이므로, 러시아의 R-Gost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자체의 적합성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 적합성 인증서 취득 절차

적합성 인증서 취득 절차는 아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관련 협약(적합성 평가에 대한 인정(Recognition) 절차에 대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CE 인증(EU 통합규격인증 마크)이 있으면 부분 인정 절차(Partial Recognition Procedure) 등 간소화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CE 인증 취득 시 적합성 인증 절차

CE 인증(CE Certificate)을 보유하면 적합성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취득하는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국가 내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된 CE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적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인정(Recognition)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CE 인증 취득 시 적합성 인증 절차

EU에서 인증된 의료기기는 부분적 인정 절차를 통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제조공장 실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조자나 제조자의 수권 대리인이 의료기기의 효능과 안전성, 품질 관리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EU에서 CE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인증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술 규정과 여타 법규정상 요구되는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있어야 합니다.

### CE 인증에 대한 인정 신청

Ukrainian Science Institute of Certification의  
office@uni-cert.com.ua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uni-cert.ua/en/otsinka-vidpovidnosti-medychnykh-vyrobiv/>

**이메일:** office@uni-cert.com.ua

**연락처:** (+0) 800-750-567 / (+38) 044-227-41-46 /  
(+38) 044-338-07-82

(적합성 평가기관에 서명된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인은 다른 적합성 평가기관에 유사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 사항

- (1) 코로나19 테스트(항체 검사 포함)에 대한 수입 관세나 부가세는 0입니다.
- (2) 비거주자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수권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수권 대리인은 우크라이나 거주자, 법인, 혹은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 (3) B2B 시장진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병원에 직접 진단 키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도 우크라이나 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공공입찰 사이트 (<https://www.dzo.com.ua/ru/registrator/sellers>)에 사전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44 의료기기 인증

**Q.**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인증(인허가)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문영준 전문위원

우즈베키스탄은 CIS 국가 중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미가입국가로 독자적인 인증 및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는 크게 3가지(표준인증, 제품등록, 위생인증)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인증**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1993년 12월 28일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전반적인 수입 품목의 인증과 국가 표준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인증을 감독하는 기관은 Uzstandard이며, 그 외의 품목들은 분야별 관련 정부 기관이 관장합니다.

**Uzstandard(감독기관)**

**주소:** 100049 333 a, st. Farobiy, Tashkent, Uzbekistan

**전화번호/팩스:** (+998-71) 246-17-63

**이메일:** uzst@standart.uz

**홈페이지:** <https://standart.uz>

Uzstandard 인증 취득 시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서, 품목설명서 제출
- 실험 프로그램 검정 및 샘플 조사
- 실험 품질 평가 및 제품 적합성
- 인증서 발급 및 국가등록

**필요 서류**

기업정보, 신청자의 인감으로 봉인된 신청서, 품목설명서 (HS 코드, 기술 특징 포함)

**제품등록**

보건부 산하 제약산업발전공사(Agency for Development of Pharmaceutical Industry)에서 담당하며 등록 비용은 2000~3000\$ (USD) (제품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 제품개요서
- 원산지국 및 타국 등록증명서
- 기기 작동 매뉴얼 및 설명서
- 임상 및 기술 시험에 관한 정보
- 기기 테스트 방법
- 국제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정보(필요시)
- 제조업체 정보(모든 서류는 러시아어 공증 필요)

**위생증명서**

제약,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통관 시 일반적으로 위생증명서가 요구되며 위생증명서는 국가에서 인가한 위생 검역 센터(Center of State Sanitary-Epidemiological Surveillance)에서 위생 및 역학적 검토를 거쳐 발급됩니다. 위생증명서 발급은 2004년 7월 6일 내각에서 승인된 N318 제품 인증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 절차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

## 위생증명서

### 제출서류

- 우즈베키스탄 세관 도착 표시가 된 선적서류(인보이스, 송장 등)
- 원산지 증명서(만약 제품에서 동식물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식물 또는 수의학 전문가의 판단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

### 유효기간

위생증명서는 발급 후 3년간 동일 제품에 대해 유효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만큼 유효합니다.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증명서 발급이 불허되면 신청자에 서면 통보되며 결과에 불복할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우즈베키스탄 인증 대행업체

표준인증은 한국의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서 인증 관련 상담 및 인증 대행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KTR 사이트를 참고 바랍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475/index.do>)

- 기타 인증대행업체: 세린스 코리아(<http://www.cerins.net>)

참고로, 의약품의 경우 한국은 Fast track 해당 국가이며, 의약품 등록은 타 국가 제품에 비해 2~3개월 정도 빠른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1,500\$(USD) 정도입니다. 필요 서류 또한 타 국가 제품에 비해 적게 필요합니다.

# 45 식품 수입 시스템

**Q.** 최근 몽골로 우리 식품 수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 합니다. 몽골의 가공식품 수입 절차와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등 몽골의 식품 수입 제도 전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A. 이성진 전문위원

몽골은 식품 수입과 관련 별도의 인증제도와 등록 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수입 절차는 수입 신고 → 서류 확인 → 식품 검사(검역) → 관세 및 기타 세금의 납부 → 세관 국경 통과 허가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

- 몽골에 등록된 법인만이 식품을 수입할 수 있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몽골은 수입식품에 관한 자체적인 식품인증시스템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취득한 식품 인증이 몽골 내에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HACCP, 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권위 있는 식품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수입식품은 자체 식품 검수, 품질 관리 체계(HACCP, GMP, ISO)를 도입한 생산 공장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위생증명서,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략 품목(우유, 분유, 육류, 밀가루, 생수 등) 수출 시 할당량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률로 지정된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수입하여 들어온 뒤 보관할 창고 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수입 위생허가

- 몽골은 식품 첨가물 및 기타 위생요건에 관한 자체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국제 식품 규격 코덱스(CODEX)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보존 유통기한이 1년인 식료품의 경우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3개월이어야 하며, 보존 유통기한이 6개월인 식료품의 경우 남은 보존기간이 최소 2개월이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수입이 일절 불가하며, 약품과 식품의 경우 제조 일자와 보존기간 또는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 수입 위생허가

- 몽골은 식품 수입 시 제품에 따라 크게 5가지 수입 등급(A, B, C, D, E 등급)이 있으며, A로 갈수록 수입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A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으로는 쌀, 우유, 주류, 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등이 있으며, 해당 등급의 식품들은 특별 허가, 라이선스가 있는 회사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허가비는 품목마다 다르고 특히, 과일 채소 청과류의 경우 각각의 아이템마다 수입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세관 검역소에 수입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된 동안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재검역을 받아야 하며, 1년의 승인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재검역 시 문제가 없어야 하며, 연장 허가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B등급 식품의 경우,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으나 매년 검역받아야 하며, B등급 제품으로는 소스류, 즉석식품, 삼계탕 등이 있습니다.

---

### 관세 및 라벨링 규정

- 몽골의 관세율은 특별세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대부분 수입 관세는 5%, 부가가치세는 10%이며 일정 품목은 계절에 따라 변동되며, 술과 와인, 담배, 맥주, 차량 연료, 디젤, 자동차 등은 특별세가 있습니다.

\* 관세: (인보이스 Value + 몽골국경까지 운송료) X 5%

\* 부가세: (인보이스 Value + 몽골국경까지 운송료+관세) X 10%

몽골 식품법은 1999년 10월에 개정되었으며, 몽골 관세청의 라벨링 규정에서는 수입식품의 라벨은 몽골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III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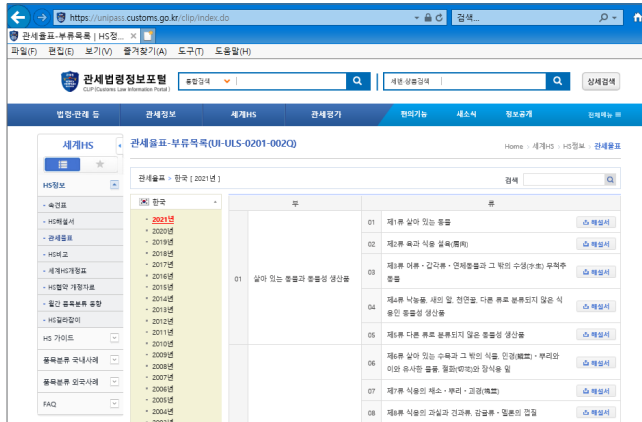
알아두면 유용한 무역·투자 정보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소개

# 1. 알아두면 유용한 무역·투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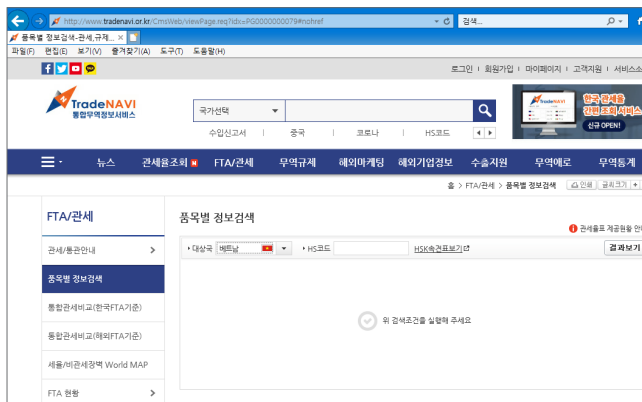
## 무역·투자 FAQ

### (1) 관세율 조회 방법

- 관세법령 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http://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 HS ➔ 관세율표 ➔ 검색창에 '품목명' 입력(국가별 검색 가능)



- TradeNAVI(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상단 검색창에서 국가 설정 후 HS 코드 입력하여 검색 가능



## ■ 국가별 관세율 조회 사이트 확인

### 신남방 11개국

라오스 <https://laotradeportal.com>

말레이시아 <https://mysstext.customs.gov.my/tariff>

미얀마 <https://myanmartradeportal.gov.mm>

베트남 <https://www.customs.gov.vn>

브루나이 <https://tradingacrossborders.mofe.gov.bn>

싱가포르 <https://enterprisesg.gov.sg>

인도 <http://indiantradeportal.in>

인도네시아 <https://intr.insw.go.id>

캄보디아 <https://customs.gov.kh/en>

태국 <https://itd.customs.go.th/igtf>

필리핀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 신북방

EAEU 회원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

몽골 <https://customs.gov.mn/btkus>

아제르바이잔 [http://c2b.customs.gov.az/Tnved\\_public.aspx](http://c2b.customs.gov.az/Tnved_public.aspx)

우즈베키스탄 [http://fmc.uz/legisl.php?id2=imbrates\\_2017](http://fmc.uz/legisl.php?id2=imbrates_2017)

우크라이나 <https://www.mdoffice.com.ua/ru/amain.html>

조지아 <https://www.rs.ge/Home>

타지키스탄 <https://tajtrade.tj>

투르크메니스탄 <https://customs.gov.tm>

## (2)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 ■ FTA 원산지증명서란

FTA 협정에 의거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서류로서 당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규정, 발행 주체, 작성 요령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FTA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 ① FTA 일반원산지증명

- 수출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발행함

#### ② FTA 연결원산지증명(Back to back C/O)

-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 협정 대상 물품이 당사국들의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중간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중간 경유국 수출자의 신청을 받아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근거로 발급함

- 다만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동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함

### ③ FTA 제3국 송장발행 원산지증명(Third Country Invoicing C/O)

- 제3국 거래에 의한 증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 물품은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지만 수입국의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수입물품 제조국이 아닌 제3국 중개업체에게 지급함에 따라 물품과 거래대금의 이동관계가 변경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됨
- 최근에 체결되는 FTA에서는 제3국 송장거래를 인정하는 추세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에서 모두 인정함

##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자율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기관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① 수출 물품 HS코드 확인

통관 취급 관세사를 통해서 수출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고, 수입국에서도 동일한 HS코드(6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HS코드는 6단위까지 국제 공통 적용이므로 협정국가 간에 동일한 정보의 HS코드를 사용해야 하나, 실제로 동일 품목에 대해 국가마다 물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이하여 다른 코드로 분류할 수 있음
-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 6단위 분류내용이 상이한 경우, 수출자는 수출 물품의 HS 분류가 정확한지 세관의 수출 물품 품목분류 심사과정을 통해 재확인하고, 바이어로부터 수입국 세관 당국의 품목판정확인서를 확보하여, 수입국 기준 HS코드를 적용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②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율 확인

상대국 양허품목인지 확인하고, 실행세율과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협정세율이 유리한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 수출 대상 품목이 이미 무관세 품목이거나 기본세율이 낮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일반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율은 각 협정별 부속서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는 FTA 특례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별표에서 규정되어 있음

### ③ 원산지 입증자료 준비

공통준비서류(모든 파일은 수정 불가능한 양식(예: PDF)으로 첨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입력)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인터넷 신청 시 신고번호만 시스템에 입력)
-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 원산지소명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원산지(포괄)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상공회의소)



\* FTA 종합지원센터(<http://fta1380.or.kr>)에서 제반 관련 지원이 가능

## 알아두면 유용한 국내외 홈페이지

연번	국가	분야	홈페이지명	홈페이지 주소	주요 유용 정보
1	전체	관세, 무역통계	트레이드맵	<a href="http://www.trademap.org">http://www.trademap.org</a>	관세조회, 무역통계검색가능
2	전체	관세-통관-세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a href="https://unipass.customs.go.kr">https://unipass.customs.go.kr</a>	통관처리과정 확인 (운송장번호로 조회)
3	전체	관세-통관-세제	무역협회 통합무역 정보서비스	<a href="https://www.tradenavi.or.kr">https://www.tradenavi.or.kr</a>	국가별 관세 조회 및 무역관련 정보 검색
4	전체	법률 자문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a href="http://www.9988law.com">http://www.9988law.com</a>	무료 법률 자문 웹사이트
5	전체	식품	농식품 수출 정보	<a href="http://www.kati.net">http://www.kati.net</a>	농수축산물 수출정보
6	전체	인증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a href="https://www.kcii.rec.kr">https://www.kcii.rec.kr</a>	전세계 화장품 수출시 인증 관련 자료
7	전체	인증 등 국가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a href="https://www.khidi.or.kr">https://www.khidi.or.kr</a>	국가별 인증정보 검색 (의료기기 등등)
8	전체	인증(인허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a href="http://www.ktr.or.kr">http://www.ktr.or.kr</a>	인증대행기관
9	전체	인증(인허가)	세린스	<a href="http://www.cerins.net/">http://www.cerins.net/</a>	인증대행기관
10	전체	조세제도	국세청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a href="https://www.nts.go.kr">https://www.nts.go.kr</a>	국가별 조세제도 확인
11	러시아	경제제재	Sanctions List Search	<a href="http://sanctionssearch.ofac.treas.gov/">http://sanctionssearch.ofac.treas.gov/</a>	미국재무부의 대러시아 제재대상 조회 사이트
12	러시아	관세-통관-세제	러시아 관세정보 확인 사이트	<a href="https://www.ifcg.ru/en/kb/trved/search/?q=&amp;g=">https://www.ifcg.ru/en/kb/trved/search/?q=&amp;g=</a>	수입관세 및 부가세, 필요인증 확인가능
13	말레이시아	기업검색	말레이시아 현지기업 검색	<a href="http://www.matrade.gov.my/en/malaysian-exporters/showcasing-malaysia-export/directory/malaysia-products-directory">http://www.matrade.gov.my/en/malaysian-exporters/showcasing-malaysia-export/directory/malaysia-products-directory</a>	품목별 현지 제조업체 / 판매업자 검색
14	베트남	기업검색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a href="https://www.korchamvietnam.com">https://www.korchamvietnam.com</a>	베트남 진출 (남부중심) 한국기업 검색
15	베트남	기업검색	베트남 Yellow Page	<a href="http://www.yv.vn/business/en.aspx">http://www.yv.vn/business/en.aspx</a> , <a href="http://en.trangvangvietnam.com">http://en.trangvangvietnam.com</a>	베트남 기업 검색
16	싱가포르	기업검색	싱가포르 Yellow Page	<a href="https://www.yellowpages.com.sg/category/shipbuilders-repairers">https://www.yellowpages.com.sg/category/shipbuilders-repairers</a>	싱가포르 바이어 검색
17	인도	관세-통관-세제	인도인 트레이드 포털	<a href="http://www.indiantradeportal.in">http://www.indiantradeportal.in</a>	인도 관세 및 통관 정보 확인
18	인도네시아	기업검색	인도네시아 상장기업 정보	<a href="https://www.investing.com">https://www.investing.com</a>	인도네시아 상장기업 재무정보 조회

## KOTRA 해외진출서비스 소개

### (1) 해외시장조사

- 담당 부서: 해외진출상담센터(02-3460-7345, 7346, 7337)
- 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수수료	회신기간	비고	조사 절차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330,000원 (VAT 포함)	사전검토 후 3주 (신청 즉시 입금)	KOTRA 수출전문위원 서비스 지원	인터넷 신청 ↓
원부자재 공급선조사	330,000원 (VAT 포함)	입금 후 3주	KOTRA 수출전문위원 서비스 지원	본사상담원 및 해외무역관 사전검토 ↓
항목별 시장조사	165,000원 (VAT 포함, 1항목)	입금 후 3주	KOTRA 수출전문위원 서비스 지원	수수료 납부 ↓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연간 6개사까지 무료 (추가시 건당 1만 원 부과)	신청 후 2주	무료서비스 * 6회/연 무료, 이후 10,000원/건별 수수료 부과	해외무역관 조사 ↓
거래선 관심도 조사	55,000원 (VAT 포함, 바이어 1개사)	신청 후 2주	국내 업체 제품에 대한 관 심 유/무 조사	결과 보고서 고객 전달 ↓
맞춤형 해외 시장조사	조사내용 및 조사 방법에 따라 개별 협의를 통해 책정			업무교신 지원 및 A/S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선납

### (2)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 담당 부서: 해외진출상담센터(02-3460-7334)
- 서비스 주요 내용: 수출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출장 시 현지 바이어 발굴, 상담 주선 및 세일즈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소정의 수수료만 받고 지원

서비스 유형	사업내용	구분	가격	서비스 안내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출장지역 내 거래선 발굴 상담 주선 (기본3~4개사) 및 상담 지원(옵션) 출장 안내 자료 제공 (시장성 조사 결과에 따라 수행여부 결정)	일반 서비스	50만 원 ~ 70만 원 (3~4개사 상담 기준)	① 일반서비스 • 상담주선+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상담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 대상기업: 통역, 차량지원 불요기업, 독자적으로 상담 진행 가능 기업
		프리미엄 서비스	100만 원 ~ 140만 원 (3~4개사 상담 기준)	② 프리미엄서비스(무역관 소재 지역 내 지원) • 상담주선+상담지원(통역 및 차량지원)+교신지원(2개월) • 상담방법: 2일간 KOTRA가 주선한 상담에 한해 지원(약 3~4개사 상담) *통역: 일부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 (‘현지어-영어’, ‘현지어-불어’ 등 지원) **차량: 원거리 방문상담 시 별도차량 임차료 발생 ➔ 대상기업: 통역, 차량 필요기업, 지사회사업 관심기업 *지사회사업 연결 시, 지사화 수수료 10% 할인

### (3) 지사화사업

- **담당 부서:** 유망기업팀(02-3460-7445, 7425, 7428)
- **서비스 주요 내용**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 기업의 시장진입 단계별 니즈에 따라 서비스를 3단계(진입, 발전, 확장)로 구분하고, 단계별 참가목적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

### (4) 수출바우처사업

- **담당 부서:** 수출바우처팀(02-3460-3417, 3419)
- **서비스 주요 내용:**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12개 분야, 7,000여 개의 서비스 지원)  
\*사업별 선정 기준 지원 한도·국고 보조율 상이

### (5) 무역투자 빅데이터 플랫폼(TriBIG)

- **담당 부서:** 빅데이터팀(02-3460-7458)
- **서비스 주요 내용**
  - KOTRA의 데이터와 국제 무역 통계로 품목의 해외 유망시장을 추천하고 주요 수출입 통계 제공
  - HS코드 및 MTI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계를 분석해 수출 동향 보고서 작성
  - KOTRA 기업회원에게 유사성이 높은 10개 해외기업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

### (6)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 **담당 부서:** 수출기업화팀(02-3346-7538, 7541)
- **서비스 주요 내용:** 국내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 무역 전문인력인 수출전문위원(PM)의 1:1 밀착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7)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 **담당 부서:** 유망기업팀(02-3460-7445, 7425, 7428)
- **서비스 주요 내용:**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이 현지 KOTRA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보관, 포장부터 물류 컨설팅까지 맞춤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2.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소개

###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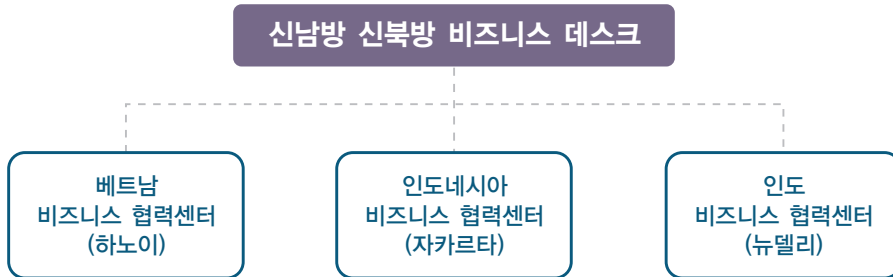
신남방·신북방 대상 지역 관련 시장개척, 투자·무역·노무·법률·세무·시험·인증 등 전문 상담

- **신남방 대상 지역:**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인도
- **신북방 대상 지역:**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4개국

### 이용 방법

접수창구	방법
전화상담	KOTRA 대표전화 1600-7119 연결 후 2번 '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 2번 '아세안' / 4번 'CIS-몽골/인도' 상담 연결
온라인상담	KOTRA 홈페이지( <a href="https://www.kotra.or.kr">https://www.kotra.or.kr</a> ) 접속 후 왼쪽상단 'KOTRA사업' 신청 클릭 ➔ '무역투자 상담' 메뉴 내 '상담방식 - 온라인상담'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상담분야 선택 후 국가/무역관 선택란에서 신남방 국가(아세안+인도)/ 신북방 국가 선택 및 문의내용 입력하여 신청(접수 후 48시간 내 답변 제공)
내방상담	방문 전 상기 전화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시간 사전 협의 후 상담 진행 *데스크 위치: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층
기타 문의	· 전화: 02-3460-3477 · 이메일: nsbd@kotra.or.kr

## 해외조직: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



### ■ 주요기능

- 대사관, KOTRA 등 현지진출 공공기관, 협·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팀코리아협약체' 운영
- 팀코리아협약체 참여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 진출기업과 진출 추진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활동 및 관련 애로 해소 지원
- 현지 국가의 협력 수요를 반영한 CSR 등 상생번영 사업 추진
- 신남방 관련 현지 정보 상호 공유

### ■ 문의 방법

- **오프라인:** KOTRA 하노이, 뉴델리, 자카르타 무역관 내 소재
- **온라인:** 무역관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 이용
  - **베트남 비즈니스 협력센터:** <http://www.kotra.or.kr/KBC/hanoi/>  
전화: (+84) 24-3946-0511 이메일: minjoon@kotra.or.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협력센터:** <http://www.kotra.or.kr/KBC/jakarta>  
전화: (+62) 21-574-1522 이메일: bokkotra@kotra.or.kr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http://www.kotra.or.kr/KBC/newdelhi/>  
전화: (+91) 11-4230-6300 이메일: mingli@kotra.or.kr

## 2021 신남방 신북방 비즈니스 상담사례집

발행인 | 유 정 열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1년 11월

주 소 | (06792)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의처 | 신남방·신북방 비즈니스 데스크  
(02-3460-3477)

| Copyright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발간자료번호 | KOTRA자료 21-185

ISBN 979-11-402-0011-5 (93320)

979-11-402-0012-2 (95320)(PDF)



2021  
**신남방**  
**신북방**  
비즈니스  
상담사례집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BN 979-11-402-0011-5 (93320)  
979-11-402-0012-2 (95320)(PDF)